군 보

선람	기 관 의 장

제606호 2021. 6. 10.(목)

조 례

제2749호 홍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3
제2750호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 7
제2751호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 8
제2752호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9
제2753호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제2754호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제2755호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제2756호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제2757호 홍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 34
제2758호 홍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36
제2759호 홍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38
제2760호 홍천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45
제2761호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2

규 칙

제1311호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57
제1312호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64

훈 령

제523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 69
제524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73
제525호 홍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 86

예 규

홍천군의회 예규 제1호 홍천군의회 출입기자 및 의정광고 운영 규정 ··· 95
홍천군의회 예규 제2호 홍천군의회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 99

고 시

제2021-248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 104
제2021-2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07

2021. 6. 10.(목) 홍 천 군 보 제606호

제2021-263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해제 고시 ··· 108

공 고

제2021-1057호 2021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농업법인 및 인턴 모집 공고 ··· 110
제2021-1069호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5
제2021-1081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 140
제2021-1088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142
제2021-1089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144
제2021-1093호 「자체 일자리사업(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행정보조)」 참여자 모집 공고 ··· 146
제2021-1104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보상청구에 따른 공고 · 152
제2021-1106호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61
제2021-1107호 홍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35
제2021-1111호 아동학대 상담 조사 업무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 173
제2021-1115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 175
제2021-111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서류의 열람 공고 ··· 181
제2021-1121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185
제2021-1128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187
제2021-1131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189
제2021-1132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191
제2021-1134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193
제2021-1135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195
제2021-1137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198
제2021-1138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변경 공고 ··· 201
제2021-1145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사업구역 출입 공고 ··· 203
제2021-1147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 205
제2021-1148호 홍천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공청회 개최 공고 ··· 208
제2021-1157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 210
제2021-1165호 개발행위기허가 및 기준공지에 대한 도로의 지정·공고 ··· 213
제2021-1166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 214
제2021-1169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216
제2021-1175호 개발행위기허가 및 기준공지에 대한 도로의 지정·공고 ··· 217
제2021-1177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변경 공고 ··· 219
제2021-1181호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변경 공고 ··· 222
제2021-118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224
홍천군보건소 제2021-13호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공고 ··· 231

회람									

발행 : **홍천군 기획감사담당관**

(전화 : 033-432-7801, FAX:033-430-2019)

조례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1년 6월 10일

홍천군조례 제2749호

홍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용역에 따라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한 용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일반용역
3.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 등의 용역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용역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군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용역의 추진 등) 주관부서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심사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중복용역 및 표절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5조(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혀 용역완수에 대한 책임을 확보하며, 연구자의 용역 수행을 지원하여 연구결과가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용역검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용역의 목적에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검수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유사·중복이나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결과의 평가) ①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용역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 평가 결과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평가의견에 따라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에 있어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용역결과 공개) 주관부서는 용역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을 군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주관부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보고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역위원회 구성·운영·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홍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연구과제명		연구기관/책임연구원	
부서명		용역담당	직급/성명
연 구 방 식	1. [ ]위탁형 2. [ ] 공동연구형 3. [ ] 자문형		
연구자 선정방법	1. [ ]일반경쟁입찰 2. [ ] 수의계약		
용 역 사 업 비	백만 원		
연 구 기 간	~ (개월)		
연 구 결 과			
평 가 결 과	· 연구목표의 달성도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 · 계약내용의 충실성 ·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 기타사항		
평가의견(총평)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부서장)
	성 명	(서명)	(서명)

■ 홍천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별지 제2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명		과제담당관	직급/성명
담당	직급/성명	실무자	직급/성명
연 구 기 간	- (개월)		
활 용 구 분	1. [ ] 조례 제.개정 2. [ ]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3. [ ] 정책참조		
연 구 목 적			
연구 주요내용			
활 용 목 적			
활 용 결 과	· 현 업무와의 연계타당성 분석 · 정책활용 결과 등		

조례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1년 6월 10일

홍천군조례 제2750호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홍천군민에게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할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통행료 지원) ① 홍천군수는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민에 대하여 강원도(이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과 도와의 재정부담 기준은 서로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홍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포함)으로 한다.

②「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2. 임차 차량

④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기준) ① 개인 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내야 한다.

제6조(대상 차종) 지원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이하 화물차 및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다.

제7조(증표관리 등) 증표 발급·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1년 6월 10일

홍천군조례 제2751호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홍천군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1년 6월 10일

홍천군조례 제2752 호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융자 등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특별회계 및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5.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건설 사업 경비,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에 따른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소관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소관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천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예탁)「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홍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홍천군 금고 및「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하거나 여유자금은「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홍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예탁)「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④ 홍천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예탁)「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⑤ 홍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예탁)「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⑥ 홍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예탁)「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⑦ 홍천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예탁)「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⑧ 홍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⑨ 홍천군 행복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예탁)「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⑩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거나「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⑪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를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거나「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⑫ 홍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재적립할 수 있다"를 "재적립하거나「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⑬ 홍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거나「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⑭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예탁)「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⑮ 홍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예치·관리한다"를 "예치·관리거나「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⑯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예치한다"를 "예치·관리하거나「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⑰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거나「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⑱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⑲ 홍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관리하거나「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⑳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를 "운용·관리하거나「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홍천군 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자금이체) 홍천군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

조례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1년 6월 10일

홍천군조례 제2753호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의 위원은 법관"을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재산등록·선물신고"를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 7명 ----------.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② ----------.
1.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5명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제6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

조례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1년 6월 10일

홍천군조례 제2754호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자녀가정" 이란 부 또는 모(보호자)와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이 관내 주소를 둔 3자녀 이상의 세대를 말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제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다자녀가정이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다자녀가정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다자녀가정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홍천군 인구정책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②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홍천군 인구정책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이 소유하고 구성원이 탑승한 자동차

③ 홍천군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홍천군 인구정책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 소	홍천군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전화번호	자택	(033) -	핸드폰		
	전입일자	20 년 월 일				

세 부 신 청 사 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직업	기 타
전입자 신청	전입 가족 현황					
	신 청 분 야	□ **지원금**(전입자 1인 5만원) ※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 봉투(20ℓ)**(전입자 1인 10매)				
		□ **작은 영화관 관람권**(전입자 1인 1매)				
		□ **상징 기념품**(신청인 1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

※ 붙임서류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붙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 전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거주기간, 전입가족 현황, 직업,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정보(성명, 주소, 전입가족현황, 거주기간 등) 활용

3.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정책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 (서 명)

2021. 6. 10.(목) 홍 천 군 보 제606호

■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자 인적사항					지원사항				
	전입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구원수 (명)	지원금		종량제봉투 (20ℓ/매)	영화관람권 (매)	상징기념품 (개)
						금액(원)	지급일			

■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별지 제3호서식]

홍천군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 신청서

신청인 (부 또는 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번호		차량 번호	
	재발급사 유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 유의사항	○신청기준 : 부 또는 모(보호자)와 미성년 자녀1명 이상이 관내 주소를 둔 3자녀 이상세대 ※ 자녀 중 막내가 만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정			

홍천군에서 시행하는「홍천군 다자녀가정 확인증」발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홍천군수 귀하

※ 구비서류 :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개인정보 처리 수집 · 이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다자녀우대 지원사업을 위해 제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o 개인정보 항목 :** 성명(부, 모, 자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o 수집 이용 목적 : " 다자녀우대지원 "** 자격 적정성 확인
- **o 보유 및 이용기간 :** 목적 외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5년 보유
- **o 동의 거부권리 :**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자녀우대지원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o 홍천군에서는「전자정부법」**제12조의2 내지 제12조의4 공공서비스**로 등재되어있는 다자녀우대지원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귀하

■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별지 제4호서식]

□ 다자녀가정 확인증(안)

○ 앞면

홍천군 다자녀가정 확인증

- 발급번호 : 제 호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 대 상 자 : 외 명
- 차량번호 :
- 유효기간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홍 천 군 수

○ 뒷면 - 다자녀가정 가족사항 및 유의사항 기재

※ 다자녀 가정 확인증(안) - 차량 부착용

다자녀 가정 차량

차량번호 :

유효기간 :

홍천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다자녀가정" 이란 부 또는 모(보호자)와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이 관내 주소를 둔 3자녀 이상의 세대를 말한다.
제5조(인구정책사업)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인구정책사업)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인구정책사업 지원내용) ① ~ ③ (생 략)	제5조의2(인구정책사업 지원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군수는 다자녀가정이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다자녀가정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다자녀가정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조례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1년 6월 10일

홍천군조례 제2755호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관광홍보"란 홍천군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홍천군(이하 "군")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⑧ "관광홍보자"란 군의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홍보하는 개인과 소셜미디어(블로거, 유튜버 등)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군수는 관광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및 개인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의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는 경우

제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제4호로 변경한다.

④ 기존 제4조 제3호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4조 제4호로 변경

제5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광홍보가 인정되는 경우 홍천사랑 상품권 지원

제5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제5호로 변경한다.

⑤ 기존 제5조 제4호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에 대하여 제5호로 변경

제17조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관광홍보"란 홍천군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홍천군(이하 "군")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8. "관광홍보자"란 군의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홍보하는 개인과 소셜미디어(블로거, 유튜버, 홍천관내 군 장병 등)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군수는 관광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등) ---------- 관광사업자 및 개인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의 관광지 및 자원 등을 관광홍보하는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사항)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관광홍보가 인정되는 경우 홍천지역 상품권 지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 등록기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2)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제17조(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 등록기준) ---------- 별표 1 ----------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조례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1년 6월 10일

홍천군조례 제2756호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수하캠핑파크"를 "수하리 캠핑파크"로, "화전민 테마마을"을 "초가체험촌"으로, "그"를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화전민 테마마을"을 "초가체험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용료"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홍천군 인구정책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라. 홍천군민인 임산부

② 제1항에 따른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이용료 (제6조 관련)**

시설별		세부시설	이용기준	이용료(원)	비고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캐 라 반 사 이 트	당일14시 ~ 익일11시	35,000	※ 캠핑장이용료는 종량제봉투 제외 가격임 ※ 최대 5인 사용가능 ※ 초등학생 이상 1인 추가 시 5,000원
		오토캠핑 사 이 트	당일14시 ~ 익일11시	30,000	
		일반캠핑 사 이 트	당일14시 ~ 익일11시	25,000	
		퇴실시간 초과	1시간 초과 ~ 2시간 미만	10,000	
			2시간 초과	사이트 1일이용료	
수하리 캠핑파크		일반캠핑 사 이 트	당일14시 ~ 익일11시	30,000	
가리산 레포츠파크	짚라인	전코스	7개 코스 1회	35,000	
		숏코스	2개 코스 1회	15,000	
	챌린지 (8시설)	로우코스 하이코스 주니어코스 익스트림 클라이밍월 네트월 스카이점프 플라잉폭스	A코스 1회	18,000	<A코스> 로우코스 하이코스 클라이밍월 네트월 스카이점프 <B코스> 주니어코스 클라이밍월 네트월 플라잉폭스
			B코스 1회 (아동용)	18,000	
			익스트림 1회	4,000	
			전코스 1회	25,000	- 기업 및 단체용 (훈련강사료 포함)
	서바이벌	체험장	7분*2회, 탄약 90알*2회	18,000	
			추가탄창 1	1,000	
		실내사격장	30알 1회	3,000	
	패키지	짚라인+챌린지+서바이벌 체험장	코스별 각 1회	60,000	
홍천스포츠클라이밍센터		실내암장 실외암벽	1일권	1인당 1,000	- 18세 이하의 홍천군민 이용료 면제
		실내암장 실외암벽	1월권	1인당 15,000	- 18세 이하의 홍천군민 이용료 면제

시설별	세부시설	이용기준	이용료(원)	비고
숲속 동키마을	입장료	입장료/먹이주기체험	5,000	- 마차체험 운영 · 개인 : 주말·공휴일 · 단체 : 평일 사전예약
		미취학아동 단체	3,500	
	승마·승나 체험	원형트랙코스 (L=80m) 1인 1회	15,000	
		미취학아동 단체	10,000	
	마차체험	광장트랙코스 (L=160m) 2인 1회	10,000	
	승마트레킹	트레킹코스 (L=450m) 1인 1회	25,000	
	전기자전거	20분 1회	10,000	
	프리캠핑 (5인기준)	당일14시 ~ 익일11시	35,000	※ 먹이주기 체험 시 3,000원 별도임 ※ 캠핑장 이용료는 종량제봉투 제외 가격임 ※ 최대 5인 사용가능 ※ 초등학생 이상 1인 추가 시 5,000원 - 퇴실시간 초과 · 1시간 초과 ~ 2시간 미만 : 10,000원 · 2시간 이상 : 사이트 1일이용료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숙박동	성수기 비수기 주말,휴일 (당일 14시~ 익일 11시)	90,000	※ 최대5인 사용가능 ※ 초등학생 이상 1인 추가 시 5,000원 ※ 퇴실시간 초과 1시간 초과 ~ 2시간 미만 : 10,000원 2시간 이상 : 숙박료
		비수기 평일 (당일 14시~ 익일 11시)	70,000	
	체험관	체험당	7,0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가리산 레포츠파크"란 짚라인 시설, 챌린지 시설, 서바이벌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관광자원시설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
1. 관광자원시설: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수하캠핑파크, 가리산 레포츠파크, 숲속 동키마을, 홍천 스포츠 클라이밍센터,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그 밖의 관광자원 관련 시설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1. ---------- 수하리 캠핑파크---------- 초가체험촌----------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예약) ①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약돌배 테마관광마을의 예약은 시설이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예약) ① ---------- 초가체험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이용료) ① 관광자원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이용료와 초과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이용료 감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광자원시설의 이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감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홍천군 인구정책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라. 홍천군민인 임산부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가. ~ 다. (생 략)	3. ----------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현 행

[별표1]홍천군 관광자원시설 이용료(제6조 관련)

시설별	세부시설	이용기준	이용료(원) 일반가격	이용료(원) 감액가격	감액대상자, 비고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캐 라 반 사 이 트	당일14시 ~ 익일11시	35,000	30,000	- 단체 - 홍천 군민 - 장기체류자 ※ 캠핑장이용료는 종량제봉투 제외 가격임 ※ 최대 5인 사용가능 ※ 초등학생이상 1인 추가 시 5,000원
	오토캠핑 사 이 트	당일14시 ~ 익일11시	30,000	25,000	
	일반캠핑 사 이 트	당일14시 ~ 익일11시	25,000	20,000	
	퇴실시간 초 과	1시간 초과 ~ 2시간 미만	10,000	-	- 감액 없음
		2시간 초과	사이트 1일이용료	사이트 1일이용료	
수하 캠핑파크	일반캠핑 사 이 트	당일14시 ~ 익일11시	30,000	-	- 감액 없음
가리산 레포츠파크 - 짚라인	전코스	7개 코스 1회	35,000	30,000	- 단체 - 홍천 군민
	숏코스	2개 코스 1회	15,000	12,000	
가리산 레포츠파크 - 챌린지(8시설)	로우코스 하이코스 주니어코스 익스트림 클라이밍월 네트월	A코스 1회	18,000	15,000	- 단체 - 홍천 군민 〈A코스〉 로우코스 하이코스 클라이밍월 네트월 스카이점프 〈B코스〉 주니어코스 클라이밍월 네트월 플라잉폭스
		B코스 1회 (아동용)	18,000	15,000	
	스카이점프	익스트림 1회	4,000	3,000	- 단체 - 홍천 군민
	플라잉폭스	전코스 1회	25,000	-	- 기업 및 단체용 (훈련강사료 포함) - 감액없음
가리산 레포츠파크 - 서바이벌	체험장	7분*2회, 탄약 90알*2회	18,000	15,000	- 단체 - 홍천 군민
		추가탄창 1	1,000	-	- 감액 없음
	실내사격장	30알 1회	3,000	-	- 감액 없음
가리산 레포츠파크 - 패키지	짚라인+챌린지+서바이벌체험장	코스별 각 1회	60,000	50,000	- 단체 - 홍천 군민
홍천스포츠클라이밍센터	실내암장 설외암벽	1일권	1인당 1,000	10인이상단체 10,000	- 18세이하의 홍천군민 이용료 면제
	실내암장 설외암벽	1월권	1인당 15,000	10인이상단체 100,000	- 18세이하의 홍천군민 이용료 면제

개 정 안

[별표1]홍천군 관광자원시설 이용료(제6조 관련)

시설별	세부시설	이용기준	이용료(원)	비고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캐 라 반 사 이 트	당일14시 ~ 익일11시	35,000	※ 캠핑장이용료는 종량제봉투 제외 가격임 ※ 최대 5인 사용가능 ※ 초등학생 이상 1인 추가 시 5,000원
	오토캠핑 사 이 트	당일14시 ~ 익일11시	30,000	
	일반캠핑 사 이 트	당일14시 ~ 익일11시	25,000	
	퇴실시간 초 과	1시간 초과 ~ 2시간 미만	10,000	
		2시간 초과	사이트 1일이용료	
수하 캠핑파크	일반캠핑 사 이 트	당일14시 ~ 익일11시	30,000	
가리산 레포츠파크 - 짚라인	전코스	7개 코스 1회	35,000	
	숏코스	2개 코스 1회	15,000	
가리산 레포츠파크 - 챌린지(8시설)	로우코스 하이코스 주니어코스 익스트림 클라이밍월 네트월	A코스 1회	18,000	〈A코스〉 로우코스 하이코스 클라이밍월 네트월 스카이점프 〈B코스〉 주니어코스 클라이밍월 네트월 플라잉폭스
		B코스 1회 (아동용)	18,000	
	스카이점프	익스트림 1회	4,000	
	플라잉폭스	전코스 1회	25,000	- 기업 및 단체용 (훈련강사료 포함)
가리산 레포츠파크 - 서바이벌	체험장	7분*2회, 탄약 90알*2회	18,000	
		추가탄창 1	1,000	
	실내사격장	30알 1회	3,000	
가리산 레포츠파크 - 패키지	짚라인+챌린지+서바이벌 체험장	코스별 각 1회	60,000	
홍천스포츠클라이밍센터	실내암장 설외암벽	1일권	1인당 1,000	- 18세 이하의 홍천군민 이용료 면제
	실내암장 설외암벽	1월권	1인당 15,000	- 18세 이하의 홍천군민 이용료 면제

현 행

시설별	세부시설	이용기준	이용료(원) 일반가격	이용료(원) 감액가격	감액대상자
숲속 동키마을	입장료	입장료/먹이주기 체험	5,000	4,000	- 단체 - 홍천 군민 - 마차체험 운영 · 개인주말 · 공휴일 · 단체평일 사전예약
		미취학아동 단체	3,500	-	
	승마 · 승나체험	원형트랙코스 (L=80m) 1인 1회	15,000	12,000	
		미취학아동 단체	10,000	-	
	마차체험	광장트랙코스 (L=160m) 2인 1회	10,000	8,000	
	승마트레킹	트레킹코스 (L=450m) 1인 1회	25,000	20,000	
	전기자전거	20분 1회	10,000	8,000	
	프리캠핑 (5인기준)	당일14시 ~ 익일11시	35,000	30,000	- 단체 - 홍천 군민 - 장기체류자 ※ 먹이주기 체험 시 3,000원 별도임 ※ 캠핑장 이용료는 종량제봉투 제외 가격임 ※ 최대 5인 사용가능 ※ 초등학생이상 1인 추가 시 5,000원 - 퇴실시간 초과 · 1시간 초과 ~ 2시간 미만 : 10,000원 · 2시간 초과 : 사이트 1일이용료 ※ 퇴실시간 초과이용 시 감액 없음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약돌배 테마 관광마을	숙박동	성수기, 비수기 주말,휴일 (당일 14시~ 익일 11시)	90,000	90,000	※ 감액없음 ※ 최대5인 사용가능 ※ 초등학생 1인 추가 시 5,000원 ※ 퇴실시간 초과 · 1시간 초과 ~ 2시간 미만 : 10,000원 · 2시간 초과 : 숙박
		비수기 평일 (당일 14시~ 익일 11시)	70,000	70,000	
	체험관	체험당	7,000	7,000	-

개 정 안

시설별	세부시설	이용기준	이용료(원)	감액대상자
숲속 동키마을	입장료	입장료/먹이주기체험	5,000	- 마차체험 운영 · 개인 : 주말 · 공휴일 · 단체 : 평일 사전예약
		미취학아동 단체	3,500	
	승마 · 승나 체험	원형트랙코스 (L=80m) 1인 1회	15,000	
		미취학아동 단체	10,000	
	마차체험	광장트랙코스 (L=160m) 2인 1회	10,000	
	승마트레킹	트레킹코스 (L=450m) 1인 1회	25,000	
	전기자전거	20분 1회	10,000	
	프리캠핑 (5인기준)	당일14시 ~ 익일11시	35,000	※ 먹이주기 체험 시 3,000원 별도임 ※ 캠핑장 이용료는 종량제봉투 제외 가격임 ※ 최대 5인 사용가능 ※ 초등학생 이상 1인 추가 시 5,000원 - 퇴실시간 초과 · 1시간 초과 ~ 2시간 미만 : 10,000원 · 2시간 이상 : 사이트 1일이용료
바회마을 화전민 테마마을, 약돌배 테마 관광마을	숙박동	성수기, 비수기 주말,휴일 (당일 14시~ 익일 11시)	90,000	※ 최대5인 사용가능 ※ 초등학생 이상 1인 추가 시 5,000원 ※ 퇴실시간 초과 · 1시간 초과 ~ 2시간 미만 : 10,000원 · 2시간 이상 : 숙박료
		비수기 평일 (당일 14시~ 익일 11시)	70,000	
	체험관	체험당	7,000	

현 행	개 정 안
※ 위탁관리시설에 대한 특례 1) 관광자원시설 이용료는 1회에 20% 범위에서 홍천군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음. 2) 그 밖에 관광자원시설에서의 변동되는 체험료 세부사항은 홍천군에 승인을 얻어 편성 및 삭제 등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삭 제>

조례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1년 6월 10일

홍천군 조례 제2757호

홍천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이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공단지 생산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해당 연도 구매계획 수립 및 전년도 구매실적 평가 등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는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하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제5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매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아파트 공급 등 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3. 교육·연수사업
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 지원 사업
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6. 협의회가 요청한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입주기업체 지원) ①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 지원보조금 :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2. 물류보조금 : 제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3. 인증 지원보조금 :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상·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공공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및 면책) ①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홍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1년 6월 10일

홍천군 조례 제2758 호

홍천군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일손부족을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 등(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홍천군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내국인 인력"이란 내국인을 대상으로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계센터」를 통하여 농촌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외국인계절근로자와 내국인 인력을 말한다.
4.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인력을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추진 할 경우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4.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고용 실태 지도 점검

제5조(지원대상) 농업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2. 고용주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
   - 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근로자 작업복, 생필품 등
3. 부득이한 경우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
   (단,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하는 경우 제외)
4.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5. 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숙박비, 운행비 등
6. 전염병 예방(코로나19 등)에 따른 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 비용
7.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절차)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은 군에서 추진하고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1년 6월 10일

홍천군조례 제2759호

홍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의 활성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로 행정리를 기본으로 한다.
2. "지역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성, 연령, 장애 유무, 인종적 배경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의 특색과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 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또는 지역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7.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8.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군 전체의 사회, 경제, 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발전 계획을 말한다.
9.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둘 이상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10.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함으로서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11.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 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 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농촌협약 위원회"란 시군 및 시도 전담조직, PM단(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과 문화, 주민의 성, 연령, 장애 유무, 인종적 배경 등의 다양성 존중
4.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군수의 역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농촌지역 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참여와 역할) ① 주민은 누구나 사업 주체로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 할 수 있다.

②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3.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4.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 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명칭·구성 및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지구는 여러 개의 마을이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9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및 컨설팅
2.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3. 마을의 소득, 교육, 문화, 복지, 경관개선, 기초생활인프라 및 주민 삶의 질 증진
4. 마을의 주민자치, 평생학습, 귀농귀촌 등 마을만들기 활성화
5. 마을간 네트워크 및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 협력
6.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평가
7.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장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제10조(기본내용) ① 군수는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 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에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道費)가 지원 될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에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농발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을 두어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사업, 군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협약 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농촌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2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간지원조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간지원조직은 홍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공동체 및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2. 마을만들기 기초 조사 및 사업의 연구·분석·평가
3. 마을만들기에 대한 국내·국외 방문객 대상의 견학 및 연수
4.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컨설팅 및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
5.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 및 국내·국외 네트워크 구축
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 지구 모니터링,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7.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군 역량강화사업
8. 마을만들기 홍보와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제작과 배포
9.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14조(지원센터의 구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 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농촌지역사회 발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지원센터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존의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귀농귀촌센터, 홍천군 문화터미널 등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제15조(지원센터의 직영 및 위탁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시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이하 "지원센터 수탁자"라 한다)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성평등한 관점에 따른 기관 운영 방안 포함)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센터 수탁자의 의무) ① 지원센터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 수탁자는 사무 인수인계를 위탁 만료 10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

③ 지원센터 수탁자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센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18조(시설물의 관리·운영) ①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주체로 필요에 따라 시설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 등 구성)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법인(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등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 세부사항은 사업지구별로 운영위원회 등이 자체적으로 정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위탁)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수탁자 선정)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해 해당지역 마을 법인이나 마을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위탁받은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갖춰 놓고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 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한다.
4.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기간 갱신) ① 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넘을 수 없다.

제24조(위탁료)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한 경우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허위서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소득시설물 운영 관리) ①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득법인과 협약을 통해 소득시설물을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소득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에 따라 소득사업에 지원받은 보조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마을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관리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통신비 및 수도료 등의 관리유지비(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수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정함)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28조(지도・감독) ① 제21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와 제26조에 따라 소득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소득법인은 현금출납부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5. 사업을 포기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7.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30조(배상책임)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손실・훼손・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장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의 이용

제31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반환
5. 이용 당일 또는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32조(이용료의 처리) ①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의 수입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3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이용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용・운영 허가 또는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운영에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7장 보칙

제3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준용규정) 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집행 및 민간단체 지원 방법 등에 관해서는「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의「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관리위탁 계약(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계약(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조례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1년 6월 10일

홍천군 조례 제2760호

홍천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홍천군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별표 1과 같이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2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되며,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군수는 전용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별표 3의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임산부 전용표시 (제3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가로 3m × 세로 5m 이상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폭 2m × 길이 6m 이상)
      ※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 있게 구획
   나. 색 상 : 분홍색, 흰색

2. 바닥면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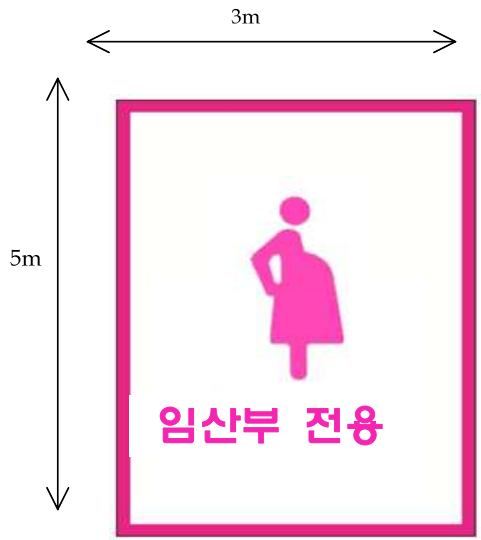

【별표 2】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4조제2항 관련)

1. 규격
   가. 규 격 : 가로 8.5cm × 세로 8.5cm
   나.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안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엠블럼)

【별표 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제5조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가로 0.7m × 세로 0.6m × 높이 1.5m
   나. 색 상 : 분홍색, 흰색

2. 기재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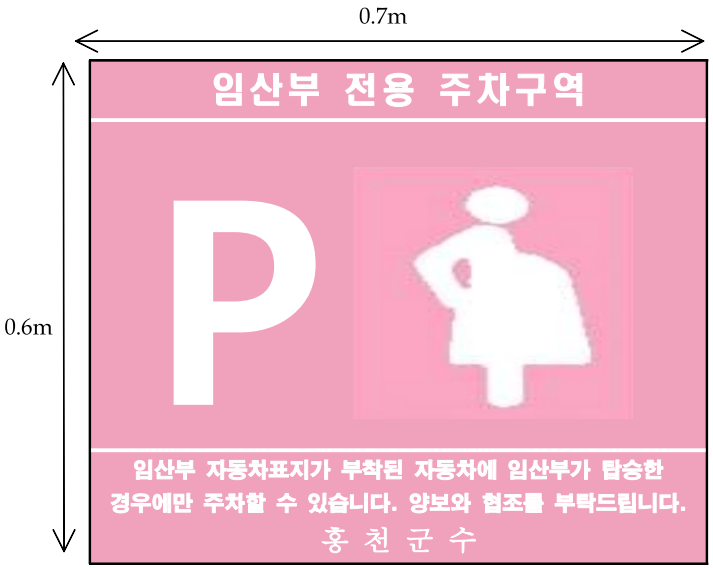

【별지 제1호서식】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임 산 부	성 명		생년월일	
	분만예정일		전화번호	
	주 소		운전면허번호	
자 동 차	소유자명		생년월일	
	자 동 차 등록번호		차종/ 차명	
	차량번호		임산부와의 관 계	
신청구분	□ 신 규 □ 재발급			
재발급 사유				

「홍천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관리대장

표지 번호	발급 일자	임 산 부				자 동 차					유효 기간
								소 유 자			
		성 명	생년 월일	전화 번호	주 소	등록 번호	차종 /차명	성 명	생년 월일	임산부 와관계	

조례

홍천군 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1년 6월 10일

홍천군조례 제2761호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천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25조"를 "법 제32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27조"를 "법 제34조"로 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료 및 수수료는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삭 제>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홍천군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간정보 운영 및 자료 유지관리 방안 2. 도로기반시설물 관련 사업추진 계획 3.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관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5.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 6. 도로기반시설물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7.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한 기관별 협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10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장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환경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교통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유관기관의 관리책임자급 이상 직원으로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공간정보업무 및 체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삭 제>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3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담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삭 제>
제14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5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군수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업무담당국장과 유관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삭 제>

제16조(자료제출요구) 위원장은 공간정보의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수당 등) 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22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법 제25조에 따라 군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법 제32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공간정보 목록작성) ① (생 략)	제24조(공간정보 목록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관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표준이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법 제21조제1항----------.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① 법 제27조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제공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① 법 제34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방법) ① (생 략)	제29조(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료 및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수입증지로 한다.	② 사용료 및 수수료는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를 준용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공간정보 자료의 복제 사용료 및 수수료 (제29조 관련)

종 류	금 액	비 고
·수치지도(1/1,000)벡터 데이터(Vector Data)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	CD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출력도면 -수치지도(1/1,000) -수치정사사진(1/1,00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	해당 축척이 없는 경우 근접한 축척 적용

규칙

홍천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1년 6월 10일

홍천군 규칙 제1311호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자"란 미시령터널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권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를 말한다.
2. "협약서"란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미시령터널 지역 주민 이용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협약서를 말한다.

제3조(재정부담) ①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른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간 예산부담 비율은 홍천군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이용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 손실금액의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② 매분기별 통행료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군의 부담금은 분기 다음 달(1,4,7,10월) 30일까지 도 금고로 납부한다.

③ 통행료 손실보상금액 지급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은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제4조(통행료 지원) 통행료 지원금액은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정상요금 전액으로 한다.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7조에 따라 개인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세대당 세대원 감면카드 등록은 4명 이내로 한다),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감면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발급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면카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면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신청서를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내야 한다.
3. 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받으면 신청자의 발급비용 납입 확인 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제6조(감면카드 관리) ① 감면카드 분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시 감면카드를 재발급 또는 변경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면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면카드를 변경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 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재발급 또는 변경 발급의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7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보내 감면카드 제작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송부받은 감면카드를 발급비용 납입확인 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면대상자가 관외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또는 주민 등록지 실제 거주여부 등을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심사·조사 후 확인된 자격상실자 명단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외 지역 전출 등으로(단체 및 법인 폐업 시와 영업용 택시 면허취소에 따른 차량 말소 시)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자격 무효처리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감면카드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 ① 군수는 감면대상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관외 지역으로 거주지(실제 및 주민등록상 모두 포함)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사람
2. 타인에게 감면카드를 양도, 매매, 대여한 사람
3.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
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
5.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가족이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지원금액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사람에 대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카드의 사용을 정지한다.

1. 1차 적발: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1개월 사용정지
2. 2차 적발: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3개월 사용정지
3. 3차 적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6개월 사용정지

제8조(업무협약)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약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자	차량번호 (소유차량 1대만 기재)	소유주	주민등록지	사용인(소유주 포함 4명이내로 기재)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홍천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부터 제6조 및 「홍천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없음	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7일
기존 감면카드 발급				감면카드 재발급				
차량번호	소유주	사용인	카드번호	차량번호	사용인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홍천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및 「홍천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재발급 사유서 1부. 2. 훼손된 감면카드	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606호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발급 신청서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7일
기존 감면카드 발급				감면카드 재발급				
차량번호	소유주	사용인	카드번호	차량번호	사용인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홍천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및「홍천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재발급 사유서 1부. 2. 기존의 감면카드 매	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606호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 발급대상자 통보서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 발급대상자 통보서							
신청자	차량번호	소유주	주민등록지	사용인(소유주 포함 전원기재)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홍천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및「홍천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시(군) 관할 지역 주민에 대한 미시령터널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 발급대상자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발신기관 홍천군수 (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대표이사 귀하

첨부서류	1. 지역주민의 감면카드 신규/재발급/변경 발급신청서 사본 1부. 2. 훼손된 감면카드 매 3. 기존 감면카드 매

■ 홍천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통행료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

통행료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

차량번호	감면카드번호	사용인 (감면카드 등록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자격상실사유	비 고

「홍천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및「홍천군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시령 터널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자격상실 사유서 1부 2. 감면카드 매	1. 주민등록 등본 1통 2. 차량등록증 1통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규칙

홍천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홍 천 군 수 허 필 홍

2021년 6월 10일

홍천군 규칙 제1312호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례 제8조에 따른 관광자원시설의 감액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관광자원시설 이용기간 및 시간 (제2조 관련)

시설명		위치	이용기간	이용시간	비고
홍천강 오토캠핑장		북방면 장항리	1월 ~ 12월	24시간	단, 운영 제외기간을 둘 수 있음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서 면 반곡리	1월 ~ 12월	24시간	
수하리 캠핑파크		서석면 수하리	4월 ~ 11월	24시간	
가리산 레포츠 파크	짚 라 인	두촌면 천현리	3월 ~ 11월	09:00~18:00	
	챌 린 지	두촌면 천현리	3월 ~ 11월	09:00~18:00	
	서바이벌	두촌면 천현리	3월 ~ 11월	09:00~18:00	
숲속 동키마을		홍천읍 상오안리	1월 ~ 12월	09:00~18:00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두촌면 괘석리	1월 ~ 12월	24시간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서 면 팔봉리	1월 ~ 12월	24시간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동 면 덕치리	동절기 (11월~5월)	09:00~18:00	
			하절기 (6월~10월)	09:00~20:00	

※ 이용시간은 위탁을 받은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 2] 관광자원시설의 감액 이용료 (제3조 관련)

시설별		세부시설	이용기준	감액 이용료(원)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감액 이용료(원)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비고
홍천강 오토캠핑장,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캐 라 반 사 이 트	당일14시 ~ 익일11시	20,000	30,000	
		오토캠핑 사 이 트	당일14시 ~ 익일11시	18,000	25,000	
		일반캠핑 사 이 트	당일14시 ~ 익일11시	15,000	20,000	
		퇴실시간 초 과	1시간 초과 ~ 2시간 미만	10,000	10,000	
			2시간 초과	사이트 1일 이용료	사이트 1일 이용료	
수하리 캠핑파크		일반캠핑 사 이 트	당일14시 ~ 익일11시	30,000	30,000	
가리산 레포츠 파크	짚라인	전코스	7개 코스 1회	20,000	30,000	
		숏코스	2개 코스 1회	8,000	12,000	
	챌린지 (8시설)	로우코스 하이코스 주니어코스 익스트림 클라이밍월 네트월	A코스 1회	10,000	15,000	
			B코스 1회 (아동용)	10,000	15,000	
		스카이점프	익스트림 1회	2,000	3,500	
		플라잉폭스	전코스 1회	25,000	25,000	
	서바이벌	체험장	7분*2회, 탄약 90알*2회	9,000	15,000	
			추가탄창 1	1,000	1,000	
		실내사격장	30알 1회	3,000	3,000	
	패키지	짚라인+챌린지+서바이벌	코스별 각 1회	40,000	50,000	
홍천스포츠 클라이밍센터		실내암장 실외암벽	1일권	500	단체인원수× 기본요금×80%	
		실내암장 실외암벽	1월권	7,500	단체인원수× 기본요금×80%	

시설별	세부시설	이용기준	감액 이용료(원)		비고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숲속 동키마을	입장료	입장료/먹이주기체험	3,000	4,000	
		미취학아동 단체	2,500	3,000	
	승마·승나 체험	원형트랙코스 (L=80m) 1인 1회	8,000	12,000	
		미취학아동 단체	6,000	8,000	
	마차체험	광장트랙코스 (L=160m) 2인 1회	5,000	8,000	
	승마트레킹	트레킹코스 (L=450m) 1인 1회	15,000	20,000	
	전기자전거	20분 1회	5,000	8,000	
	프리캠핑 (5인기준)	당일14시 ~ 익일11시	20,000	30,000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약돌배 테마 관광마을	숙박동	성수기, 비수기 주말,휴일 (당일 14시~ 익일 11시)	90,000	90,000	
		비수기 평일 (당일 14시~ 익일 11시)	70,000	70,000	
	체험관	체험당	7,000	7,000	

[별표 3]

이용료 환급 기준(제4조 관련)

시설구분	계약해제 원인	계약해제 시기	환급기준	비고
- 홍천강 오토캠핑장 -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 바회마을 **초가체험촌** - 약돌배 테마 관광마을 - **수하리 캠핑파크** - 가리산 레포츠 파크 (짚라인, 챌린지, 서바이벌 시설) - 숲속 동키마을	이용객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10일전 취소	총요금의 100% 환급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준용 (공정거래 위원회)
		~ 7일전 취소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5일전 취소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3일전 취소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당일 취소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10일전 취소	납부금액의 100% 환급	
		~ 7일전 취소	납부금액의 110% 환급	
		~ 5일전 취소	납부금액의 130% 환급	
		~ 3일전 취소	납부금액의 150% 환급	
		~ 당일 취소	납부금액의 180% 환급	

※ 예약 및 이용료 선납 후 24시간 이내에 착오취소시 납부금액 전액 환급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불가시 기일에 관계없이 납부금액 전액 환급

훈령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5월 25일

홍천군수 허 필 홍

홍천군 훈령 제523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 4, 5,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 7. 1.>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표(총괄)

부서별	구분	합계: 계	합계: 정무직	합계 일반직: 2~9급	합계 일반직: 전문경력관	합계 일반직: 지도직	합계 일반직: 연구직	정무직	서기관	기술서기관	서기관·기술서기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농업·시설	기술서기관·보건·간호·의무사무관
계	정원	841	1	793	2	40	5	1	2	1	1		
본청	정원	467	1	460	1		5	1	2		1		
의회	정원	12		12									
직속기관	정원	140		99	1	40				1			
사업소	정원	35		35									
읍면	정원	187		187									

부서별	5급: 계	행정	의무	행정·사회복지	행정·농업	행정·녹지	행정·환경	행정·시설	시설·방재안전	행정·농업·시설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행정·공업·환경·시설	행정·농업·녹지·시설	행정·농업·환경·녹지	행정·농업·환경·시설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illegible]
계	32	7		2	2	1	1	3	1	1	2		6	1	1	1	1	1	1
본청	17	7		2	2	1	1	3	1										
의회	2									1					1				
직속기관	2																	1	1
사업소	1													1					
읍면	10										2		6			1	1		

부서별	6급: 계	행정	세무	농업	의료기술	간호	보건진료	환경	시설	녹지	행정·세무	행정·전산	행정·사회복지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녹지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공업·시설	농업·수의	농업·환경	보건·간호	시설·환경
계	172	26	2	3	1	1	6	2	14	1	5	1	10	3	20	6	1	2	15	1	2	1	2	
본청	103	21	2	3				2	12	1	5	1	9	3	5	6		1	14		2	1	1	
의회	2	2																						
직속기관	13				1	1	6										1						1	
사업소	8								2									1	1	1				
읍면	46	3											1		15									

부서별	행정·세무·농업	행정·세무·보건	행정·세무·시설	행정·방송통신	행정·전산·농업	행정·사회복지·농업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illegible]·시설	행정·공업·환경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환경	행정·농업·시설	행정·녹지·시설	행정·방재안전	행정·환경·시설	공업·환경·시설	보건·의료기술·간호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행정·사회복지·농업·환경	행정·공업·환경·시설	행정·농업·녹지·시설	전기운영·기계운영·시설관리	운전
계	5	1		1	2	9	1	1	1	3		5	1	1	2	1	3		2	2	1	1	4
본청		1		1			1	1	1				1	1						2	1		4
의회																							
직속기관																	3						
사업소															1	1						1	
읍면	5				2	9				3		5			1				2				

[별]

일반직 7급

부서별	구분	소계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공업	농업	녹지	보건	의료기술	간호	보건진료	환경	시설	방재안전	방송통신	행정·세무	행정·사회복지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행정·방용	전산·방통	수의·해수	보건·식품위생	보건·간호	행정·사서	행정·농업·녹지	행정·농업·시설	환경·시설·공업	전기운영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화공운영	운전
계	정원	203	51	6	3	13	2	7	5	9	3	5	6	2	27	1	1	6	2	2	14	1	4	9		1	3	2	2	2	1	1	1	1	1	1	1	7
본청	정원	132	44	6	3	8		7	5	1				2	21	1	1	5	1	1	1		3	8		1	3	1		2		1					1	5
의회	정원	3	3																																			
직속기관	정원	28								8	3	5	6									1						1	2									2
사업소	정원	10	1				2								1					1			1	1									1	1	1			
읍면	정원	30	3			5									5			1	1		13										1					1		

일반직 8급

부서별	구분	소계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공업	농업	녹지	보건	의료기술	간호	보건진료	환경	시설	방재안전	방송통신	행정·사서	행정·세무	행정·사회복지	행정·속기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환경	행정·방통	행정·시설	농업·수의	농업·해양수산	보건·간호	행정·녹지	전산·시설	농업·녹지·시설	전기운영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화공운영	운전
계	정원	234	50	8	4	18	7	3	2	2	7	22	7	6	18	2	1	2	2	4	1	1	13	6	1	15	1	1	4	4	1	1	2	3	1	1	13
본청	정원	134	37	8	4	8	6	2	2	1				4	14	2	1	2	2	3			3	4	1	14	1	1	1	4	1	1	1	1			5
의회	정원	3	1																		1																1
직속기관	정원	43					1	1		1	7	22	7																3								1
사업소	정원	6												2	1											1							1			1	
읍면	정원	48	12			10									3					1		1	10	2										2	1		6

[별]

일반직 9급

부서별	구분	소계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공업	농업	녹지	보건	의료기술	환경	시설	방송통신	행정·사회복지	행정·사서	행정·공업	행정·농업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시설	공업·시설	공업·환경	행정·방재안전	시설·방재안전	행정·세무·시설	공업·환경·시설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사무운영	방호	운전	시설관리
계	정원	148	36	1	1	17		5	5	5	4	4	9	1	5	5	3	2	1	4	4	2	1	1	1	1	1	2	6	5	1	2		10	3
본청	정원	71	16	1	1	2		5	5	1		4	7	1	5	5	1	1		2	3	1	1	1	1	1		2				2		1	1
의회	정원	2																												1				1	
직속기관	정원	12								4	4								1											1				2	
사업소	정원	10															1				1	1					1		3					1	2
읍면	정원	53	20			15							2				1	1		2									3	3	1			5	

전문경력관 나급 · 지도직 · 연구직

부서별	구분	전문경력관 나급 소계	영사	무대공연	농기계교관	지도직 농촌지도관	지도직 농촌지도사	연구직 학예연구	연구직 기록연구	연구직 녹지연구
계	정원	2	1		1	3	37	3	1	1
본청	정원	1	1					3	1	1
의회	정원									
직속기관	정원	1			1	3	37			
사업소	정원									
읍면	정원									

훈령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5월 25일

홍천군수 허 필 홍

홍천군 훈령 제524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 7. 1.>

기관별 담당의 명칭 및 직급·직렬

기관별	담당관·과·소·읍·면별		담당명칭	직급 및 직렬
직속기관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보건주사
	(기술4)	보건정책과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5)	진료담당	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
			예방의약담당	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
			감염병관리담당	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
		건강증진과 (보건·간호·의료기술·보건진료5)	건강증진담당	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지방보건진료주사
			정신건강담당	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지방보건진료주사
			방문보건담당	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
			건강생활지원담당	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
			치매관리담당	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지방의료기술주사·지방보건진료주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관)	농촌사회과 (농촌지도관)	지도기획담당	지방농촌지도사
			교육경영담당	지방농촌지도사
			생활문화담당	지방농촌지도사
			농기계담당	지방농촌지도사
			귀농귀촌담당	지방농업주사·지방농촌지도사
		기술보급과 (농촌지도관)	작물환경담당	지방농촌지도사
			원예기술담당	지방농촌지도사
			소득작목담당	지방농촌지도사
			과학영농담당	지방농촌지도사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시설·환경·공업5)		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
			상수도시설담당	지방시설주사
			누수방지담당	지방시설주사
			상수도운영담당	지방시설주사·지방공업주사
			마을상수도담당	지방환경주사·지방공업주사·지방시설주사
			하수도담당	지방환경주사·지방시설주사
	홍천읍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주민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세무주사
			찾아가는 보건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전산주사
			산업경제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건설환경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지방환경주사
	화촌면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주민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찾아가는 보건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세무주사
			산업경제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두촌면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
			주민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기관별	담당관·과·소·읍·면별	담당명칭	직급 및 직렬
읍면		산업경제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녹지주사
	내촌면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세무주사·지방농업주사
		주민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산업경제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서석면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주민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찾아가는 보건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세무주사
		산업경제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동면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
		주민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산업경제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녹지주사
	남면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
		주민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찾아가는 보건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산업경제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서면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전산주사
		주민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환경주사
		찾아가는 보건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산업경제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
	북방면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주민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세무주사
		산업경제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내면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
		주민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사회복지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환경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산업경제담당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녹지주사

[별표 2] <개정 2021.7.1.>

담당명	세 부 분 장 사 무 내 역
직속기관	
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행정 담 당	1. 보건업무 종합기획 조정 2.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중보건의사 인사 및 복무지도 감독 4.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및 인사, 복무관리 5. 의료장비.차량 및 물품관리 6. 보건통계 관리 7.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8.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9. 보건기관 청사관리 10. 회계, 일반서무 및 보안업무 11. 노인건강관리 12. 만성질환 원격건강관리 13.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진 료 담 당	1. 진료업무 2.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민원접수 및 수가징수 관리 4. 진료수입 징수결의 5.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업무에 관한 사항 7. 무료이동진료 8.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9. 보건정보시스템관리
예방의약 담 당	1.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2. 약국 개설신고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3. 안경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지도사항 4. 국가예방접종관리 5.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6.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 7. 소독의무대상시설 및 소독업소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장기·조직기증 및 헌혈관리 9. 건강진단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0. 생물테러에 관한 사항
감염병관리 담 당	1. 질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감시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3. 결핵관리 업무 4. 성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업무 5. 한센관리 업무 6.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에 관한 사항 7. 6.25전사자 찾기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건강증진 담 당	1.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3.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4.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관한 사항 5. 금연교육 및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민영양관리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주민참여형 건강플러스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8. 통합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9.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10.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업무

	11. 영유아 건강검진에 관한 업무
정신건강 담 당	1.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2.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관리에 관한 업무 5. 국가암관리에 관한 업무 6.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 저소득층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방문보건 담 당	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2.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3. 한의약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천식·아토피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중심재활에 관한 사항 7.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사항 9. 재가암환자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증진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자원봉사자 육성에 관한 사항
건강생활지원 담 당	1. 만성질환 중점관리 사업 2. 지역주민 신체활동사업 3. 지역주민 영양사업 4. 지역주민 금연.절주사업 5. 지역주민 구강건강관리사업 6. 지역건강협의체 구성운영 7. 건강동아리 구성 및 활동 8. 지역사회 건강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양성 및 활동 9. 건강플러스마을사업 지원
치매관리담당	1.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업무 총괄 2. 치매인식개선사업 3.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지원 4. 치매예방관리사업 5. 기타 치매관리 관련 사업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 지도기획 담 당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및 조정 2.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 실천, 평가 3. 농촌지도사업 실행지침 수립 및 보고서 작성 4. 지도인력 관리 5. 일반서무 및 회계업무 6. 재산(청사, 차량, 물품 등)관리 7. 지도공무원 전문특기관리 및 교육훈련 8. 농업산학 협동 및 심의회 운영 9. 시청각 기자재 관리 10.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1. 소방안전관리 및 위험물관리 12. 민원사무 접수 및 처리 13. 농촌진흥사업 홍보 및 기록관리 14. 농업기술 공보(방송, 신문보도) 15.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16. 지소 운영관리

교육경영 담 당	1. 농촌지도자 조직 육성 2. 4-H회(학생4-H, 영농4-H) 조직 육성 3. 4-H회 교육 행사추진 및 평가 4. 청년농업인 육성 5. 산업기능요원 추천 및 사후관리 6. 농고와의 산학협동 7.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사후관리 8. 농촌청소년 진로지도교육 9.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10.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11.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12. 농업인대학 운영 13. 강소농 육성 사업 14.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및 지원 15. 농업기술교재 개발 및 제작지원 16. 우수농산물(GAP) 인증교육 추진 17. 농가경영 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 18.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사업성 검토 및 경영지도 19. 농업기술 도서 시청각 자료관리 및 대여 20. 농업인 정보화 교육 21. 농업경영컨설팅 체계 구축 지원 22. 농업.농산물 가격정보 수집, 분산 23.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 24. 신규농업인 교육 및 경영기술지도 25. 농업정보 관련 기관단체 협력 및 기술보급 26. 도시민 농심교육 27. 농촌리더 역량강화 교육
생활문화 담 당	1. 농촌생활문화 사업의 계획, 실천, 평가 2.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3.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 및 육성 4. 농촌형 외식산업 활성화 5. 농촌생활문화 개발 및 보급 6. 생활개선회 및 연구모임 육성 7. 농촌여성 영농기술교육 보급 8. 농촌노인 건강생활지도 9.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운영지도 10. 농촌체험관광 및 농촌교육농장 육성 11. 농작업 안전관리 기반조성 및 작업환경 개선지도 12. 전통음식 계승활동 지원 13.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농외소득원 개발 14. 6차산업 육성사업 지도 15. 농촌자원 핵심지도자 양성 16. 농촌체험활성화 기반조성 17. 향토음식 발굴 및 자료구축 18. 농촌전통생활문화 발굴 및 보존 19. 농촌여성 도농교류 활성화 20. 소득작목 가공기술 개발 21.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22. 농식품 가공상품 개발 23. 지역 농식품가공업체 상품화 지원 24. 농식품 가공·창업 보육 프로그램 운영 25. 농식품 창업농가 시제품 개발 및 육성
농 기 계 담 당	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2.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작업 안전교육 3.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4. 농기계임대사업 지소 운영지원
5. 농작업 대행사업

귀농귀촌 담 당

1. 귀농귀촌 지원사업 기획 및 조정
2. 귀농귀촌지원센터
3. 귀농인의 집, 귀농인 사랑채 업무
4. 귀농귀촌단체 관리
5. 귀농귀촌학교 및 프로그램 운영
6. 도시민농촌유치 및 귀농인 신규영농정착 지원
7. 귀농인정착지원금, 귀농귀촌박람회
8.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관리
9. 귀농귀촌 특구업무
10. 기타 귀농귀촌 및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보급과
작물환경 담 당

1. 식량작물 장.단기 기술지도 계획수립 및 보급
2. 쌀 안정생산 단계별 교육 및 홍보
3. 고품질(GAP) 벼재배 기술지도
4. 벼농사 적기영농추진 기술지도
5. 벼 생산비 절감 및 생력재배 기술지도
6. 벼 병충해 예찰 및 방제기술지도
7. 벼 우량품종(신육성) 비교 시범포 운영
8. 벼농사 새기술시범 및 특수시책 시범사업 운영
9. 벼 생육관찰포 운영 및 생육조사
10. 벼 보급종 채종단지 안전생산 기술지원
11. 밭작물 새기술 보급시범 및 시책사업
12. 밭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재배기술 지도
13. 밭작물 생육 관찰포 생육조사
14. 벼, 콩, 감자, 옥수수 등 보급종 종자 신청 및 보급
15. 농업기상 분석 및 기술지도 대책수립 추진
16. 찰옥수수, 콩 채종단지 운영
17. 주요 밭작물 고품질(GAP) 생산기술 보급 및 지원
18.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개발 보급
19.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시범 및 실증사업
20. 친환경농업단체 육성 및 자재사용 기술보급
21. 환경농업특성화 시범마을 육성
22. 농업 자연재해 예방대책 홍보, 지도
23. 농약 안전사용 교육 및 기술보급
24. 병해충종합관리(IPM)교육 및 기술보급
25. 농작물 병해충 기본 예찰답운영
26. 병해충 예찰 및 자료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27. 농작물 병해충진단실 운영
28. 천적증식 및 외래해충 예찰.방제기술지도
29.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30. 농작물 병해충 방제
31. 영농현장 애로사항 현장기술지원 및 컨설팅

원예기술 담 당

1. 노지채소 안정재배 기술보급
2. 시설채소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지도
3. 고랭지 채소 기술지도 및 대체작목 개발 보급
4. 새기술 보급 및 현장 대체작목 개발 보급
5. 원예작물 새기술보급 시범 및 실증시험
6. 과채류 주산단지 조성 및 기술지원
7. 원예작물 지역특성화 및 특수시범사업(도,군)
8. 원예작물 생육관찰포 운영
9.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지도
10. 버섯류 새기술 보급 및 현장 대체작목 개발 보급
11. 약초, 인삼재배 기술지도
12. 에너지 절약농업 및 생력화 재배기술 보급
13. 인삼.약초 등 특용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기술지도

14. 화훼 새기술보급 시범 및 실증시범
15. 화훼 지역특화 시범사업
16. 화훼 병충해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17. 야생화 자생식물 소득자원화
18. 수출농업 육성 및 기술지도
19. 주요작물 재배 및 생산 관측조사
20. 친환경 경제작물 재배기술 개발보급
21. 오미자, 구기자, 산채 재배기술 지도 및 시범사업

소득작목 담 당

1. 우량종묘, 종자 생산공급
2. 현장애로기술 개발 및 실증시범
3. 농업인 개발과제 발굴추진
4. 벤처농업기술 발굴 및 추진지도
5. 토종종자, 유전자원 보존 관리
6. 자원식물 이용기술개발
7. 신소득작목 발굴 및 보급
8. 신기술.신자재투입 실증시험 분석
9. 농업 실용화기술 개발 보급
10. 지역농업개발 시범사업
11. 자생식물 재배기술 개발보급
12. 과수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및 실증시범
13. 과수 지역특화 시범사업
14. 과수신품종 확대보급 및 특수시책사업
15. 과수 병충해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16. 실증시험포장 운영관리

과학영농 담 당

1. 종합검정실 운영
2. 농경지 토양 종합검정
3. 토양 중금속 정밀분석
4. 식물체 정밀분석
5. 농업용수 수질분석
6. 농산물안전성 잔류농약 분석
7. 논·밭농업직불제 교육·토양검정 및 기술지도
8. 논·밭토양 검정결과 전산화 추진
9. 논·밭토양 정밀검정 5개년 계획 수립추진
10. 축분발효액비 정밀분석 및 시비처방
11. 친환경인증농가 정밀토양검정 및 컨설팅
12. 퇴비부숙도 정밀분석
13. 농생물이용연구실 운영
14. 액상미생물 활용기술 연구 및 보급
15. 입상미생물 활용기술 연구 및 보급
16. BM 활성수 활용기술 연구 및 보급
17. 친환경 농자재 활용기술 연구 및 보급
18. 기능성 유용미생물 연구개발 및 활용기술 지도
19. 농외분야 유용미생물 친환경적 활용 지도
20. 축산분야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농촌진흥사업)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관 리 담 당

1. 상수도 공기업 예산편성 및 집행
2. 상수도 공기업 공사・용역・물품・기타 계약에 관한 업무
3. 일반회계 계약 및 집행
4. 상수도 인력 및 교육관리
5. 상수도 공기업 결산 및 경영진단 평가
6. 상수도 공기업 재산관리 및 자산평가
7. 상수도 세입・세출결산
8. 상수도 공기업 예산 및 징수관리프로그램 관리
9. 상수도공기업 지방채・일시차입금・채무부담행위 관리
10. 상수도사용량 검침 및 사용료 부과 조정

	11. 상수도사용료 징수 및 수납부 관리 12. 하수도사용료 부과 13. 상수도공기업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14. 회계 및 일반서무 15. 그밖의 상수도 행정에 관한 사항
상수도시설 담 당	1.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2. 홍천군 물 수요관리계획 수립 3. 지방상수도 시설계획 및 확장사업 4. 지방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5. 지방상수도 신설급수 공사 6.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및 관리 7.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시설사업)
누수방지 담 당	1. 홍천군 유수율제고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홍천군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추진 3. 지방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사업 추진 4. 지방상수도 상수도관망 GIS구축 및 관리 5. 지방상수도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 6. 지방상수도 상수도관망 상황실 운영 7. 지방상수도 지선수리반 및 누수탐사반 운영 8. 옥내 노후급수관 개선사업(보조사업) 9. 소규모 배수지 및 가압장 유지관리
상수도운영 담 당	1.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2.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3. 계측기기 점검 유지관리 4. 상수도 급수대책 수립 시행 5. 상수도 취정수장 생산량 관리 6. 저수조 청소 및 시설관리 7. 취정수장 근무인력 관리 8.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변경 및 관리 9. 상수도 통계관리 10. 수돗물 품질보고서 작성 11.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12. 지방·전용상수도 수질실험 및 수질관리 13. 태학 취정수장, 가압펌프장 시설의 경계 및 경비 14.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마을상수도 담 당	1.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및 개보수 계획 수립 2.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 3. 소규모 수도시설 정기점검 4.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관리 5.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6. 지하수개발 및 온천수 이용관리 7. 전용상수도 인허가 및 관리
하수도 담 당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시행 2. 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 3. 하수관로 신설계획 수립시행 4.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5. 하수관망 관리 6. 마을하수도 신설계획 수립 및 시행 7. 하수관거 정비계획 수립시행 8.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 9. 하수도사업 공사감독 10. BTL사업 운영 성과평가 11.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12. 배수펌프장 운영

	13. 하수도사용량 검침 및 사용료 부과조정 14. 하수도사용료 징수·수납·세입·결산 15. 하수도 통계업무 16. 하수도 지방채 채무관리 17.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18. 수질관리 특별회계 업무 19. 배수설비 인허가 수립사항 20.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관리 21.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지도감독 22. 한강수계기금 사업계획 수립 23. 한강수계기금 성과평가 24. 공공하수도 서비스평가 25. 공공하수도시설 대수선사업 추진 26. 그 밖의 하수도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의 회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5. 의회청사시설, 장비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8.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9. 각종 회의록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의정보도자료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12.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3.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위원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읍·면 읍 총무담당	1. 시책업무 추진 2. 도지사, 군수지시사항 추진 3.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 4.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 5. 공인관리 6. 기록물 관리 7. 비밀문서 수발.보관 등 보안관리 8. 당직 및 비상근무 9. 청사, 차량관리 10. 행정구역 명칭 및 구역조정 건의 11. 리개발위원회 운영 12. 이반장 관리 13. 여론 동향보고 및 관리 14. 지역문화, 축제, 체육행사 15. 읍 체육회 운영 16. 적십자회비 모금 17. 상훈 추천

	18.	선거관련 사무
	19.	예산 편성 및 집행
	20.	회계관리
	21.	각종 계약관리
	22.	물품관리
	23.	보직인사관리
	24.	복무관리
	25.	취학아동 관리
	26.	민방위 업무
	27.	통계업무
주민복지 담 당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접수 및 진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자증명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거주지 이동 신고
	4.	수급대상자 조사표 관리
	5.	장제 및 해산보호비 신청 및 진달
	6.	의료보호증 발급신청서 진달
	7.	사회복지시설 입소 추천
	8.	명절위문품 지급
	9.	자활기금 신청서 진달
	10.	복지위원의 추천
	11.	고속도로할인 카드식별표지 교부
	12.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3.	매장(화장, 매장) 신고
	14.	노인의 날 행사 지원
	15.	경로연금 신청 접수 및 진달
	16.	무의탁노인 등 실태조사 및 방문상담
	17.	무의탁노인 결연사업
	18.	경로당유지관리
	19.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20.	소년.소녀가장조사 및 방문상담
	21.	모.부자가정 실태조사 및 방문상담
	22.	복지급여(시설입소) 신청접수 및 진달
	23.	요 보호여성 실태조사
	24.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25.	주택개량지원 업무(주민복지과 업무)
	26.	청소년·아동 복지
맞춤형복지 담 당	1.	복지서비스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2.	주민교육 및 홍보
	3.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
	4.	복지사각지대 서비스 연계
	5.	찾아가는 복지상담
	6.	방문상담
	7.	맞춤형 서비스 연계
	8.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욕구조사
	9.	사례회의
	10.	사례판정 및 배부
	11.	사례관리 가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실행
	12.	사례관리 가구 사후 모니터링
	1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1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리
	1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교육 및 행사 지원
	16.	자원 발굴 및 배분
	17.	자원 수혜자 발굴 및 전달
	18.	행복e음 자료관리
민원담당	1.	가족관계(제적)등록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3.	인감증명에 관한 사항
	4.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5.	제증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6.	신원증명(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산업경제 담 당	1.	농정시책에 관한 사항
	2.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축산업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4.	가뭄대책에 관한 사항(양수기 관리 등)
	5.	산림 · 도로변 가꾸기에 관한 사항
	6.	각종 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불대책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건설환경 담 당	1.	소규모 주민숙원 및 지역사업 시행
	2.	현장확인 및 준공
	3.	하천관리
	4.	도로공사 측량 및 감독
	5.	제설작업
	6.	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
	7.	건축물 철거(멸실) 확인
	8.	재해(수해)피해 실태조사
	9.	재해.재난시설물 안전점검
	10.	수방자재 비축관리
	11.	하천.수리시설 등 재해예방시설 현지 예찰
	12.	재해.재난 발생시 응급복구
	13.	재해구호 등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 관리
	14.	자연정화활동
	15.	쓰레기불법투기, 불법소각 지도
	16.	쓰레기종량제 계도
	17.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18.	환경미화원 관리
	19.	청소장비관리
	20.	쓰레기봉투판매업소 지정 및 취소
	21.	재활용품 수집(폐비닐, 농약병) 지도 및 신청
	22.	지하수 수질검사 (입회 및 봉인)
	23.	하천수 시료채취
	24.	먹는물 공동시설 채수 및 시설관리 지원
	25.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및 약품투여
	26.	도로변 환경정비
면		
총무담당	1.	서무, 여론동향, 공무원 소양복지
	2.	인사, 복무, 보안업무
	3.	선거업무
	4.	일반회계 지출 및 물품·계약 관리
	5.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6.	리.반장 관리
	7.	청사유지 관리
	8.	옥외광고물 신고(현수막신고,불법광고물 관리)
	9.	지방세 체납액 징수
	10.	체육관리(체육행사,면 체육회 운영,체육시설 유지관리)
	11.	취학업무(의무취학예정자조사,대상자통보 및 통지서 배부, 취학아동 명부 작성 및 열람)
	12.	소규모수도시설관리(수질검사,약품투여)
	13.	주택업무(주택개량,빈집정비)
	14.	하천,골재관리
	15.	그 밖에 관련 실과소 협조에 관한 사항
주민복지	1.	쓰레기처리 및 청소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담 당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관한 사항
	3.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관한 사항
	4.	여성복지(저소득 한부모, 보육료 감면 일반)
	5.	노인복지
	6.	다문화가정, 부녀복지에 관한 사항
	7.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8.	묘지의 매장, 개장에 관한 사항
	9.	방역소독
	10.	청소년·아동 복지
	11.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12.	이재민 구호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관련 실과소 협조에 관한 사항
맞춤형복지 담 당	1.	복지서비스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2.	주민교육 및 홍보
	3.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
	4.	복지사각지대 서비스 연계
	5.	찾아가는 복지상담
	6.	방문상담
	7.	맞춤형 서비스 연계
	8.	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욕구조사
	9.	사례회의
	10.	사례판정 및 배부
	11.	사례관리 가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실행
	12.	사례관리 가구 사후 모니터링
	1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1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리
	1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교육 및 행사 지원
	16.	자원 발굴 및 배분
	17.	자원 수혜자 발굴 및 전달
	18.	행복e음 자료관리
민원담당	1.	가족관계(제적)등록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에 관한 사항
	4.	인감증명에 관한 사항
	5.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6.	제증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7.	신원증명(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련 실과소 협조에 관한 사항
산업경제 담 당	1.	농정시책에 관한 사항
	2.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축산업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4.	가뭄대책에 관한 사항(양수기 관리 등)
	5.	산림 · 도로변 가꾸기에 관한 사항
	6.	각종 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불대책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련 실과소 협조에 관한 사항

훈령

홍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5월 25일

홍천군수 허 필 홍

홍천군 훈령 제525호

홍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우리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임무) ① 우수 체육인의 발굴·육성과 우리군 홍보를 위하여 홍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기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율적인 경기부의 운영으로 체육대중화와 활성화 도모
2. 경기부의 우수한 경기력을 통하여 체육경쟁력 강화 및 지역홍보
3. 체육지도자 및 선수육성으로 체육진흥기반 구축

제3조(조직 및 정원) ① 경기부는 일반선수단으로 역도 및 태권도를 운영하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기부를 증설 또는 해체할 수 있다.

② 경기부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 장: 체육업무 담당국장
2. 감 독: 체육업무 담당과장
3. 주 무: 체육업무 담당주사
4. 지도자: 코치

③ 선수단은 지도자 1명, 선수 4명 이하로 한다. 다만, 군수가 경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수 정원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선수를 증원 할 수 있다.

제4조(직무) 경기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경기부를 대표하며 지휘·감독한다.
2. 감독은 단장을 보좌하고 선수훈련 및 경기를 감독하며, 선수의 발굴·육성 및 일상생활 등을 지도감독 한다.
3. 주무는 선수의 발굴육성 및 훈련, 대회참가와 선수단 운영의 행·재정업무 등 실무를 담당한다.
4. 지도자는 선수의 훈련, 경기지도, 체력관리, 우수선수선발 등을 담당한다.

제5조(입단자격) 지도자 및 선수의 입단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지도자의 입단자격은 선수경력 6년 이상 또는「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3. 선수의 입단자격은 선수경력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4. 대학(고등학교)졸업예정자는 마지막학기 수업종료 시점에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선발기준) 지도자와 선수는 제5조 및 다음 각 호의 선발기준에 따라 단장의 추천으로 서류심사 후 군수가 임용한다.

1. 지도자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중앙경기단체의 경력증명 및 추천을 받은 사람
나. 강원도체육회 및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그 밖에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선수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국체전 및 전국규모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경력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홍천군의 지역출신 선수로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

제7조(입단계약체결) 지도자 및 선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와 입단계약을 체결한다.
1.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임용기간 만료 후 계속되는 단원은 임용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단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2. 입단계약 체결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이력서 1통
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각 1통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라. 지도경력증명서(중앙경기단체 발행), 선수경기실적증명서(중앙경기단체발행) 1통
마. 건강진단서 1통
바. 입단계약서 1통
사.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 이적동의서 1통(해당시)
3. 임용된 지도자 및 선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개인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서약) 지도자 및 선수는 입단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재직・경력증명서・이적동의서 발급) ① 군수는 재직 중인 지도자 및 선수가 재직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지도자 및 선수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이적동의서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이적동의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해임요건) 군수는 지도자 또는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 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2. 체육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3.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4. 경기성적이 저조하여 그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
6.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7. 계약이 만료된 사람
8. 매년 입상성적을 별표 4에 따른 순위별 점수를 합하여 60점 이하인 사람
9.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되는 자

제11조(복무) 지도자와 선수의 복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와 선수는 임용된 날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한다.
2. 지도자와 선수의 근무시간은 일반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되, 강화훈련 선발전에 대비한 특별훈련기간은 예외로 한다.
3.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훈련을 명할 수 있다.
4. 지도자와 선수는 연 15일 이내의 연가, 연 30일 이내의 병가, 예비군훈련 등에 필요한 공가

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훈련 또는 경기도중의 사고로 인한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병가를 연장할 수 있으며, 이외의 특별 휴가는 단장의 결재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5. 지도자 및 선수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2조(보수)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본급은 경력 및 성적에 따라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며, 지급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운동경기부 선수단 봉급표는 별표 1과 같다.
3. 운동경기부 선수단 호봉조정은 별표 2와 같다.
4. 지도자 및 선수에게 각종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등급조정) ① 선수의 등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근 1년 성적을 기준으로 등급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임용선수의 등급은 최근 3년 성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A급 선수는 현 국가대표 또는 전국체육대회 1위 이상 입상성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B급 선수는 전국체육대회 2위 입상자 또는 A급 선수로서 경기력이 저하되는 사람으로 한다.
3. C급 선수는 전국체육대회 3위 입상자 또는 전국대회 입상성적(1~3위)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4. D급 선수는 경기력은 부족하나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선수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선수의 등급이 상·하향될 경우에는 변경된 등급보수로 지급한다.

제14조(포상금) ① 입상선수에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3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지도자는 최고 수혜선수와 동등하게 지급한다.

제15조(상해보험) 지도자 및 선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지원하며 해임과 동시에 해지한다.

제16조(퇴직금) 선수단에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사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산정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2.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보수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17조(훈련 및 대회출전) ① 감독은 연간훈련 및 대회 참가계획을 지도자에게 제출받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도자는 선수의 훈련 및 대회참가 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일지에 기록정리하고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회출전은 도 단위 이상의 대회와 전국 및 국제대회에 참가한다.
④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체력 및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선수의 기량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 전지훈련, 우수선수 초청훈련 또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합숙소 운영) ① 경기력 향상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임대료,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도자와 선수단의 합숙소는 별도로 운영하고 합숙소 내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인 1실 또는 2인 1실 형태 등 국토교통부 최저주거기준에 부합되도록 운영한다.

제19조(훈련피복비 지급 등)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복비는 매년 하・동계에 지급하며 훈련용품은 필요할 때 단장의 결재를 받아 지급한다.

제2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천군 인사관리규정」, 「홍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동경기부 선수단 봉급표(제12조 관련)

호봉	지 도 자(6급)	선 수			
		A급(7급)	B급(7급)	C급(7급)	D급(8급)
1	7호봉 상당	10호봉 상당	4호봉 상당	1호봉 상당	1호봉 상당
2	8호봉 상당	11호봉 상당	5호봉 상당	2호봉 상당	2호봉 상당
3	9호봉 상당	12호봉 상당	6호봉 상당	3호봉 상당	3호봉 상당
4	10호봉 상당	13호봉 상당	7호봉 상당	4호봉 상당	4호봉 상당
5	11호봉 상당	14호봉 상당	8호봉 상당	5호봉 상당	5호봉 상당
6	12호봉 상당	15호봉 상당	9호봉 상당	6호봉 상당	6호봉 상당
7	13호봉 상당	16호봉 상당	10호봉 상당	7호봉 상당	7호봉 상당
8	14호봉 상당	17호봉 상당	11호봉 상당	8호봉 상당	8호봉 상당
9	15호봉 상당	18호봉 상당	12호봉 상당	9호봉 상당	9호봉 상당
10	16호봉 상당	19호봉 상당	13호봉 상당	10호봉 상당	10호봉 상당
11	17호봉 상당				
12	18호봉 상당				
13	19호봉 상당				
14	20호봉 상당				
15	21호봉 상당				
16	22호봉 상당				
17	23호봉 상당				
18	24호봉 상당				

[별표 2]

호봉조정 기준(제12조 관련)

1.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선수의 최고호봉은 10호봉, 지도자의 최고호봉은 18호봉으로 한다.
2. 호봉승급은 입단계약 후 1년(12월)이 경과된 다음 달을 기준으로 조정한다.
3. 초임호봉 기준

지 도 자	선 수(A)	선 수(B)	선 수(C)	선수(D)
일반직 6급 7호봉	일반직 7급 10호봉	일반직 7급 4호봉	일반직 7급 1호봉	일반직 8급 1호봉

[별표 3]

지도자 및 선수수당 지급기준(제12조 관련)

□ 수당

구 분	대상자	지급기간	지급액	비 고
상여금	지도자 및 선수	3월, 6월, 9월, 12월에 25%씩 지급	기본급 100%	
명절휴가비	지도자 및 선수	설날 및 추석날에 속한 달에 60%씩 지급	기본급 120%	
훈련수당	지도자 및 선수	매월	15만원	
선수관리수당	지도자	매월	10만원	
가족수당	지도자 및 선수	매월	배우자 4만원 가족은 1인당 2만원	
급식비	지도자 및 선수	매월	30만원	
목욕비	지도자 및 선수	매월	10만원	
국가대표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	선발된 다음달부터 매월(1년을 초과할 수 없음)	5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도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별표 4]

대회별 입상성적 점수표(제10조, 제13조 관련)

대 회 별		순 위 별				비 고
구 분	대 회 명	1위	2위	3위	4~5위	
국제대회	올림픽경기	100	90	80	60	
	세계대회	80	70	60	40	
	아시안게임	80	70	60	40	
	아시아대회	60	50	40	20	
국내대회	전국체전	60	50	40	20	
	전국대회	40	30	20	10	
	그 밖의 대회 (도민체전, 실업팀대회 등)	20	15	10	-	

※ 국제대회 중 세계대회 및 아시아대회는 다음과 같다.

1. 세계대회
   ㄱ. 세계선수권대회
   ㄴ. 그랑프리세계대회
   ㄷ. 유니버시아드대회
   ㄹ. 청소년세계선수권대회

2. 아시아대회
   ㄱ. 아시아오픈선수권대회
   ㄴ. 청소년아시아선수권대회

※ 전국대회는 10개 시·군 이상 참여대회를 말한다.

[별표 5]

포상금 지급기준(제14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 순위	올림픽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기타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그 밖의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1위	10,000	5,000	1,000	500
2위	5,000	3,000	700	300
3위	5,000	2,000	500	200

※1. 국제대회란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대표선수로 출전하는 대회로 한다.
2. 그 밖의 국제대회란 10개국 이상의 외국팀이 참가하는 대회로 한다.
3. 같은 대회에서 다수 입상한 경우 높은 순위를 적용하여 1회만 지급한다.
4. 역도경기종목 중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은 합계만을 지급하며, 그 밖의 대회는 합계와 인상·용상 중 높은 포상금만 지급한다.(단체전은 포상금액의 50% 지급한다)
5. 체육진흥기금 격려금과 중복 지급할 수 없다.

예규

홍천군의회 출입기자 및 의정광고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6월 2일

홍천군의회의장 공 군 오

홍천군의회 예규 제1호

홍천군의회 출입기자 및 의정광고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홍천군의회의 취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출입기자 제도와 홍천군의회의 효율적 의정광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어떤 사실이나 현상 등을 기사화하여 보도하거나 대중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2. "출입기자"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출입하면서 본회의, 임시회 또는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취재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 신청된 언론사의 기자 등을 말한다.
3. "의정광고"란 의회 일정이나 의정활동, 지역 특산품이나 행사 또는 각종 공고 등 의회에서 언론사를 통해 대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광고를 말한다.

제3조(출입기자 신청 대상) 출입기자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사의 기자 등(이하 "기자"라 한다)으로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발행 사업자
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
4. 「방송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었거나 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허가, 신고 또는 등록되었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제4조(출입기자 신청) ① 출입기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기자 신청서(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제3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입기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소속이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언론사의 관련 공문

② 출입기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언론사나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언론사에서 출입기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출입기자 신청 인원) 제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사의 출입기자 신청은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언론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2명 이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제6조(출입기자 신청 취소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기자 신청을 취소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기자 신청 대상 사업의 허가, 신고, 등록 또는 승인 등이 소멸하거나 출입기자로 신청한 자가 해당 언론사의 소속이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입기자 신청을 한 경우
3.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제1항 또는 제80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의회 취재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출입기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은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출입기자 관리)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출입기자로 신청한 기자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관리한다.

제8조(출입기자 편의 제공) ① 의장은 출입기자에게 의회 보도자료 등을 우선 배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출입기자에게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브리핑 참석 및 관련 기사 송고를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출입기자가 아닌 기자의 취재 등) 의장은 출입기자로 신청하지 않은 자가 기자로서 취재하고자 할 경우에도 취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정광고 계획) ① 의장은 매년 의정홍보 등을 위한 의정광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비를 집행해야 한다.

② 의정광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의정광고 언론사
2. 의정광고 시기 및 횟수
3. 언론사별 의정광고 집행예산
4. 그 밖에 효과적인 의정광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의정광고 예산 과다 편성 및 집행 금지) ① 각종 언론사의 의정광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효율적인 광고와 예산집행을 고려하여 의정광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예상하지 못한 의정광고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한 예산을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선심성으로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의정광고 언론사) ① 의정광고 언론사는 제3조 각 호의 출입기자 신청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 중에서 의장이 선정한다.

1. 홍천군에 본사, 지사, 지국 또는 지점 등을 둔 언론사
2. 홍천군에 주재기자를 둔 언론사

② 의장은 제1항의 의정광고 언론사를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의 접근성, 신뢰도
2. 언론사의 건전성
3. 특정 종교나 단체, 집단과 관련한 언론사인지 여부
4. 의정광고 예산규모
5. 그 밖에 의정광고 효과성 등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의정광고의 목적이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정광고 언론사를 따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에 의회 출입기자로 활동하던 기자는 이 규정에 따라 출입기자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출입기자 [ ]신규 [ ]변경 신청서

언론사			구분	(일간) (인터넷) (주간) (월간)	
언론사 주 소			언론사 연락처		
홈페이지					
성 명		생년월일		사진	
부 서 (직 위)	( )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사무실				
	전자우편				
개인정보 수집동의	출입기자 신청·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수집함 (동의일로부터 신청취소일까지 보유함) 동의( ) 비동의( ) ※ 동의하지 않을 시 출입기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홍천군의회 출입기자 신청 및 의정광고 운영 규정」 제4조에 따라 홍천군의회 출입기자로 (변경)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홍천군의회의장 귀하

※ 첨부서류
1. 제4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언론사 추천 공문 1부
3.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JPG파일)

[별지 제2호 서식]

홍천군의회 출입기자 관리대장

신청일자	구분	언론사명	사진	출입기자 성명	연락처 (사무실 전화번호)	E-mail	비고

예규

홍천군의회 출입기자 및 의정광고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6월 2일

홍천군의회의장 공 군 오

홍천군의회 예규 제2호

홍천군의회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홍천군의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청 및 승인에 관한 대상,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후원명칭"이란 각종 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후원기관으로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 사용은 의회의 명칭, 휘장, 로고 등 상징물 전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승인 대상) ① 후원명칭은 공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 또는 의회 의정 활동과 관련이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성 행사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여 법인·단체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공익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비영리성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2. 정치적 성향이 있는 행사
3. 단체 및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4. 전문적인 안전관리 및 예산의 지원이 요구되는 행사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사

제4조(사용승인 신청)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후원명칭 사용 예정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 상에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한다)
3. 신청인의 현황
4. 신청인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제3호에서 국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없이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용승인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신청사항 검토 등)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의장에게 보고한다.

1. 사용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의 목적, 내용, 규모 및 공익성 행사인지 여부
3. 신청인의 설립목적, 운영현황, 행사개최의 역량
4. 의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 후원요청 사항
5.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

제6조(사용승인 결정) 의장은 사무과장의 검토보고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1. 후원명칭 사용신청 또는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2. 사용승인 사항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원명칭의 사용과 관련한 주요사항

제7조(사용승인 알림) 사무과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따로 붙일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 취소 등) ① 사무과장은 행사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신청인이 이 규정이나 사용승인 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된 행사 또는 해당 신청인에 대해서는 그 이후 최소 3년 이상 후원명칭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후원명칭을 사용한 행사의 사용자나 단체 등에게는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안내와 경고를 하고, 향후 사용승인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지도·확인) 사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 사용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행사진행 과정을 지도·확인할 수 있다.

제10조(행사결과 제출 등) ① 사무과장은 후원명칭의 사용승인을 받은 신청인의 행사 등의 성격상 결과보고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행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행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행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1년간 후원명칭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이미 후원명칭을 사용한 행사는 이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신청인 (기관·단체·법인)	명 칭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요 청 사 유				
행 사 명				
행 사 목 적				
행 사 내 용				
행 사 주 최				
행 사 주 관				
후원예정 기관명				
행 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후원명칭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행 사 장 소				
참 석 대 상				
참 석 예 정 인 원				

「홍천군의회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위 행사에 대한 귀 의회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법인.단체명) 대표자○ ○ ○ (직인 또는 서명)

홍천군의회의장 귀하

※ 첨부 서류

1.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 대책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
2. 기관 또는 법인.단체 현황 1부(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3.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설립허가서나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4.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별지 제2호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서				
신청인 (기관·단체·법인)	명 칭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대 표 자		생 년 월 일	
행 사 명				
행 사 목 적				
행 사 내 용				
행 사 주 최				
행 사 주 관				
후원예정 기관명				
행 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후원명칭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행 사 장 소				
참 석 대 상				
참 석 예 정 인 원				
승 인 사 유				
기 타 참 고 사 항				

「홍천군의회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위 행사에 대한 홍천군의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홍천군의회의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행사결과 보고서

① 행 사 명						
② 일시/장소	일시		장소			
③ 행사기관	주최		주관		후 원	
④ 참여인원	※ 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⑤ 후원명칭 사용내용						
⑥ 행사개최내용						
⑦ 특기사항	※ 안전사고 유무, 행사 진행 과정 중 특이한 내용, 성과(기대효과), 건의사항 등					

「홍천군의회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법인.단체명) 대표자○ ○ ○ (직인 또는 서명)

홍천군의회의장 귀하

고시

홍천군 고시 제2021-248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에 관한 고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 년 06 월 03일

홍 천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내용

읍면	도로 종류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m)	주 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 (폐지.변경) 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포장 너비	
서면	군도	14	서면 팔봉리 152-20	서면 팔봉리 272-3	1,016.0	팔봉리	8.0 (m)	8.0 (m)	군도 정비

2.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
3. 사업시행자 : 홍천군수
4. 자금계획 : 3,500백만원
5.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홍천군 건설방재과 도로관리담당
7. 설계도서 : 생략(홍천군 건설방재과 도로관리담당에 비치)
8. 편입토지조서 : 별첨

편입용지조서(1)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동/리					성 명	주 소	성명	기타권리	
1	서면	팔봉	152-20	전	122	3.3	군	홍*군			
2	서면	팔봉	152-19	전	29	1.2	군	홍*군			
3	서면	팔봉	152	전	49	33.5	군	홍*군			
4	서면	팔봉	152-2	전	158	158.0	군	홍*군			
5	서면	팔봉	323-5	임	6,817	145.0	이*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로 ***,***동 ****호(**동, *******)			
6	서면	팔봉	323-24	임	4,019	6.0	황*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길 **, ***동 ****호 (**동, **********)			
7	서면	팔봉	152-4	도	1,829	1,430.6	국	농*****부			
8	서면	팔봉	287-7	답	198	198.0	이*연	홍천군 서면 **리 ***			
9	서면	팔봉	288-1	답	84	84.0	김*연	홍천군 서면 **리 ***			
10	서면	팔봉	285-4	답	187	187.0	이*설	홍천군 서면 **리 ***			
11	서면	팔봉	276-14	답	2,479.6	14.9	이*길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 **			
12	서면	팔봉	276-13	답	803.8	43.9	도	강*도			
13	서면	팔봉	276-12	답	1,965.9	74.5	정*봉	홍천군 서면 **리 ***			
14	서면	팔봉	276-11	답	3,016.3	130.7	이*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로**번길 ***-*, **호 ***호(**동, **빌라)			
15	서면	팔봉	276-10	답	1,302	74.7	이*홍	경기도 오산시 가수로**, ***동 ***호(가수동,농*********빌)	***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6	서면	팔봉	276-9	답	1,281.3	43.4	이*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로 ***-*			
17	서면	팔봉	276-8	답	3,272.3	102.0	이*명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로 ***-*			
18	서면	팔봉	252-3	구	2,982.7	2,219.8	국	건***부			
19	서면	팔봉	298-1	답	190	190.0	정*희	홍천군 서면 ***로 ***번길 *			
20	서면	팔봉	296-1	답	98	98.0	이*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로***번길 **, ****동 ***호 (**동, **********)			
21	서면	팔봉	291-1	전	180	180.0	이*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 ***-*			
22	서면	팔봉	292-1	답	78	78.0	이*모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번길 **, ***동 ***호 (**동, **아파트)			
23	서면	팔봉	293-1	답	109	109.0	이*복	인천광역시 서구 **로 ***-*(**동)	홍*군	외피	
24	서면	팔봉	312-1	답	30	30.0	이*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 ***-*			
25	서면	팔봉	274	도	312.2	45.4	국	농*****부			
26	서면	팔봉	252-2	구	2,582.7	2,287.6	국	건***부			
27	서면	팔봉	272-10	답	1,086.5	66.6	김*자	충청북도 청주시 **구 **로 **, ***-***(산남동, *****아파트)			
28	서면	팔봉	272-9	답	1,693.6	60.8	이*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로**번길 ***-*, **호 ***호(**동, **빌라)			
29	서면	팔봉	272-8	답	3,068.6	66.6	민*석	서울특별시 **구 **로 ***, *동***호(번동,***아파트)			
30	서면	팔봉	272-7	답	3,169.8	51.2	이*연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번길 **	***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31	서면	팔봉	272-6	답	2,745.3	0.8	지*미	홍천군 서면 ***길 ***번길, ***-*			
32	서면	팔봉	324-1	전	147	147.0	박*분	경기도 시흥시 ***로***번길 **, ***동 ***호 (**동, **아파트)			
33	서면	팔봉	324	전	1,235	303.6	박*분	경기도 시흥시 ***로***번길 **, ***동 ***호 (**동, **아파트)			
34	서면	팔봉	325-1	답	37	37.0	김*서	홍천군 서면 ***길 ***번길, ***-*			
35	서면	팔봉	324-5	전	1,070	126.0	박*분	경기도 시흥시 ***로***번길 **, ***동 ***호 (**동, **아파트)			
36	서면	팔봉	324-3	도	237	12.0	최*국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동(**동,****아파트)			
37	서면	팔봉	335-2	도	204	22.0	이*선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로**번길 **, ***동 ***호 (*******, **아파트)			
38	서면	팔봉	335	전	9,306	301.0	최*춘	강원도 춘천시 ***로 ***, ***동 ****호 (**동, ***** ** ****)			
39	서면	팔봉	152-5	도	31	31.0	국	농*****부			
40	서면	팔봉	335-1	전	2,374	326.0	이*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로, ***동 ***호(****아파트)	**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41	서면	팔봉	152-10	도	538	348.5	국	농*****부			
42	서면	팔봉	341	전	415	66.0	신*숙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로 ****	**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상권	
43	서면	팔봉	341-4	전	90	7.0	홍*혁	강원도 동해시 **길 ***-*, ***동 ***호 (**동, *******아파트)			
44	서면	팔봉	341-2	전	516	58.0	홍*옥	강원도 동해시 **길 ***-*, ***동 ***호 (**동, *******아파트)			
45	서면	팔봉	341-3	전	161	17.0	홍*종	강원도 홍천군 *면 ***길 **			
46	서면	팔봉	341-1	대	330	36.0	나*석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로**번길 **-**, *동 ***호(**빌라*차)	****주식회사	근저당권, 지상권	
47	서면	팔봉	847	전	3,077	36.0	이*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 ***-*			

편입용지조서(2)

일련번호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읍/면	동/리					성 명	주 소	성명	기타권리	
48	서면	팔봉	262-5	답	2,228	206.5	이*길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 **	***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49	서면	팔봉	262-4	답	1,143.1	125.0	이*강	경기도 군포시 ***로**번길 **, ***동 ****호(당동,******-****)			
50	서면	팔봉	000-27	가상지목	-	11.6	-	-			미사번
51	서면	팔봉	845	대	450	450.0	이*길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 **			
52	서면	팔봉	845-1	답	116	15.0	이*주	서울시 ***구 **로 *** ***동 ****호(**동,*******)			
53	서면	팔봉	846-1	전	855	202.0	이*록	인천광역시 서구 **로 ***-*(**동)			
54	서면	팔봉	252-1	구	971	698.5	국	건***부			
55	서면	팔봉	848-1	전	2,817	691.0	김*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길 ** (**동)			
56	서면	팔봉	152-14	도	109	109.0	국	농*****부			
57	서면	팔봉	152-15	도	81	81.0	국	농*****부			
58	서면	팔봉	262-3	답	2,456.6	78.4	이*강	경기도 군포시 ***로**번길 **, ***동 ****호(당동,******-****)			
59	서면	팔봉	262-1	답	3,927.7	196.1	이*강	경기도 군포시 ***로**번길 **, ***동 ****호(당동,******-****)			
60	서면	팔봉	848-9	전	1,157	110.0	진*미	경상북도 상주시 **동 ***-*			
61	서면	팔봉	848-8	대	660	24.0	박*철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 *			
62	서면	팔봉	848-21	도	31	31.0	박*철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 *			
63	서면	팔봉	848-20	잡종지	400	31.0	박*철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 *			
64	서면	팔봉	152-17	천	1,565	58.8	국	농*****부			
65	서면	팔봉	818	전	1,880	730.0	이*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로***번길 **-***(**동)	****협동조합	근저당권	
66	서면	팔봉	848-11	전	2,314	103.0	정*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길 ** (**동)			
67	서면	팔봉	816-1	도	71	19.0	군	홍*군			
68	서면	팔봉	814-3	도	271	14.0	이*연	홍천군 서면 **리 ***			
69	서면	팔봉	272-11	답	2,797.8	88.6	박*근	강원도 춘천시 *면 **리 ***			
70	서면	팔봉	287-2	전	496	4.0	김*섭	강원도 춘천시 **로***번길 **, ***동 ***호 (**동, **아파트)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지상권	
71	서면	팔봉	287-1	전	30	30.0	김*섭	강원도 춘천시 **로***번길 **, ***동 ***호 (**동, **아파트)	****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지상권	
72	서면	팔봉	276-7	답	3,389.5	78.0	이*정	홍천군 서면 **리 ***			
73	서면	팔봉	276-6	답	3,495.4	70.6	이*직	홍천군 서면 **리 ***			
74	서면	팔봉	276-5	답	2,000.2	28.8	이*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로***번길 **, *동 ***호(**동,**아파트)			
75	서면	팔봉	276-4	답	1,168	19.9	정*정	홍천군 서면 ***길 ***번길 *			
76	서면	팔봉	276-3	답	2,814.8	79.1	이*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로***번길 **, ****동 ***호 (**동, **********)			
77	서면	팔봉	276-2	답	994.8	19.3	이*길	인천시 남동구 **로 ***, ****동 ****호(**동, *******)	****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78	서면	팔봉	276-1	답	973.8	30.0	박*호	홍천군 서면 ***길 ***번길 *	****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79	서면	팔봉	315	전	1,253	12.0	농**회	홍천군 서면 **리 ***			미등기
80	서면	팔봉	315-1	전	108	108.0	농**회	홍천군 서면 **리 ***			미등기
81	서면	팔봉	272-2	답	2,474.9	3.7	정*우	춘천시 **동 ***-**			
82	서면	팔봉	272-1	답	2,285.6	1.7	이*희	홍천군 서면 **리 ***			
83	서면	팔봉	271	도	397.5	21.5	국	농*****부			
84	서면	팔봉	262-2	답	2,644.6	16.6	이*강	경기도 군포시 ***로**번길 **, ***동 ****호(당동,******-****)			
85	서면	팔봉	291	전	2,131.0	34.0	이*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 ***-*			
86	서면	팔봉	272-5	답	2,457.0	29.3	정*석	홍천군 서면 ***길 ***번길 ***-*			
87	서면	팔봉	272-4	답	2,192.4	93.7	정*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로 **, ***동 ****호 (***동, **마을)			
88	서면	팔봉	272-3	답	3,167.5	105.0	이*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로 ***, ***동 ****호(**동,*******)			
합 계					#####	14,925.8					

홍천군 고시 제2021-2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7일

홍천군수

1. 도로구역 결정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 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기정	군도	8호	하오안~풍천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일원	321,325.9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산12-1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385-10	홍천군 북방면	26.54㎞
변경	군도	8호	하오안~풍천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일원	321,263.9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산12-1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385-10	홍천군 북방면	26.54㎞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시행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 2021.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게재 생략
(발간관련 한정된 용량으로 인해 생략,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열람장소에서 확인 가능)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홍천군 건설방재과 도로관리담당(☏ 033-430-2857)

6. 지형도면 : 열람장소에 비치

홍천군 고시 제2021-263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해제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및 해제 고시합니다.

2021년 06월 09일

홍 천 군 수

1. 목 적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위험도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재해방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소규모 위험시설을 해제 및 지정 고시 하고자 함.

2.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및 지정 고시 대상
"붙임.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및 지정 고시 대상" 참조
※ 사업 시기, 예산, 내용 등은 국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3. 지정근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4.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및 지정일 : 2021. 06. 09.

5. 문 의 처 : 강원도 홍천군 경제국 건설방재과(033-430-2891)

붙 임 :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및 지정 고시 대상 1부.

○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고시 대상

연번	구 분	시설명	시군구	읍면동	리	지 번		사업량		정비현황	비고 (처리년도)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연장 (m)	폭 (m)		
1	소교량	모종천 무명1교	홍천군	내촌면	도관길	42	42	19	4	안전점검 평가결과	2020
2	소교량	성동천 무명5교	홍천군	북방면	화동리	573	573	36	4	보수공사 완료	2019
3	소교량	자운천 무명4교	홍천군	내면	자운리	1223	1223	11	4	보수공사 완료	2020

○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대상

연번	시설명칭		시군구	읍면동	리	지 번		사업량		정비계획	비고
	구 분	명 칭				시작지점	끝나는지점	연장(m)	폭(m)		
1	소교량	대곡천 무명1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292-1	292-1	5	4.8	'21년 이후	신규
2	소교량	문현교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744-1	744-1	80	2.8	'21년 이후	신규
3	소교량	내린천 무명3교	홍천군	내면	율전리	185	185	40	4.5	'21년 이후	신규

공고

홍천군 공고 제2021-1057호

2021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농업법인 및 인턴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농산업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 제공 및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동기부여 마련을 통해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농업법인에게 유능한 인재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농업법인 및 인턴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모집개요	◦모집지역 : 전국 ◦모집대상 : 농업법인 및 청년인턴 희망자 ◦모집기간 : 2021.04. ~ 06.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uni.agrix.go.kr) 내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신청" 배너 클릭 및 신청서 작성
지원내용	◦농업법인에 채용 인턴 1인당 월 급여의 80%이내(월 161.6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969.6만원(최대 6개월)까지 법인당 최대 3명 지원 *단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신청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법인 및 청년

2. 사업자 제외대상

구 분	내 용
청년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과거에 지원받은 자(중복지원 불가) ◦정부·지자체의 유사사업(인건비 지원) 지원대상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선정이 취소된 자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사업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자 ◦병역법에 따라 특례근무 중인 자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또는 반복참여 제한
농업법인 등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제재 중인 법인 ◦과거 고의적 지침 위반, 불이행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반환처리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농업법인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자진포기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 ◦농림사업자금의 부당사용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지원제한 처분을 받고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법인 *부당사용금액(농림사업 제한기간) : 5억원 이상(6년), 3억원-5억원 미만(4년), 5천만원-3억원 미만(3년), 2천만원-5천만원 미만(2년), 2천만원 미만(1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농업법인

3. 자격요건

구 분		내 용
청년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9세 미만 (주민등록 상 '82.01.01. ~ '03.12.31. 출생자) ◦사업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법인과 계약한 근무기간(최소3개월) 동안 인턴활동이 가능한 청년 ◦재학생인 경우, 학교 휴학자 또는 마지막학기 재학 중으로 졸업 이후 취업활동이 가능한 청년만 가능하며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학교 등 온라인 교육이 주된 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은 참여가능
농업법인 등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의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농업법인(참고1)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 작성 또는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한 농업법인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2년 이상인 농업법인 *단, 청년농업인이 농업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운영실적 1년 이상인 경우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 ①직전 2년 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 ②상시종사자 5인 이상, ③경영규모 기준표 [참고2] 상 '전업농' 이상의 경영규모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적 경제 조직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농식품부에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사회적농업 실천 조직 *단,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농업 실천조직의 법인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4. 우선선정

구 분	내 용
청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하였으나 선발되지 않은 자 ◦비대면 업무를 위한 전자상거래, 네트워크관리, 빅데이터 분석 등 관련 자격증 취득한 자 <취업취약계층>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단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⑬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자 또는 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 등
농업법인 등	1순위. 청년 희망 직무 부여 예정자,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독립경영예정자 실무수습 요청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항의 농촌지역에 소재한 농업법인 2순위. 선도 농업법인, 스마트팜 시설을 보유한 농업법인 <스마트팜 시설 보유 농업법인> ICT(정보통신기술)를 온실·축사 등에 접목하여 스마트폰, PC를 통해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하는 농장 ① 생육환경 유지관리 SW(온실·축사 내 온습도, CO2수준 등 생육조건 설정) ② 환경정보 모니터링(온습도, 일사량, CO2, 생육환경 등 자동수집) ③ 자동·원격 환경관리(냉·난방기 구동, 창문개폐, CO2, 영양분·사료 공급 등) 3순위.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2021. 6. 10.(목) 홍 천 군 보 제606호

5.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청년	필수서류	◦사업신청서[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신청서 작성]
농업법인 등	필수서류	◦사업신청서[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신청서 작성]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이행확약서 ◦정보제공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법인 명의) : 공고일 이후 발행 ◦최근 2년 재무제표 : 세무서 또는 국세청 발급분 *우선순위 12순위 법인인 경우(청년농업인 대표 등),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매출액 증빙으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사업신청 시, 고용계약 시 2회 제출
	우선선정 증명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 농업인확인서(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확인서는 제출일 이전 3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에 한정하며(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6조), 농업경영체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 ◦사회적 경제조직 :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증 또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선정 관련 증명서류 ◦스마트팜 시설 보유 농업법인 :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따라 설치한 <준공 후 안내문>의 사진, 그 외의 경우 복합환경제어기(복합환경제어시스템) 생산자와의 계약체결서 또는 제어기 구매영수증 등 ◦선도농업법인 : 신지식농업인 증서, 현장실습장 인증서, 농업마이스터 지정서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농업법 :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타 우선선정 관련 증빙서류

* 이 외 주관기관이 자격검증을 위하여 필요시 요구하는 서류

참고1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별표6)

[별표6 : 제35조제9항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참고2 전업농 경영규모 기준표

품목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고소득 전업농	전업농	준전업농	성장가능농	성장한계농
농가소득	100백만원 초과	100 ~ 60	60 ~ 30	30 ~ 15	15미만
쌀	○ 10ha 초과	○ 6ha 이상	○ 6 ~ 3ha	○ 3ha 이하	○ 1ha미만
과수	○ 2.5ha 초과 (사과, 배,포도) ○ 3ha 초과 (복숭아, 단감, 귤)	○ 1.5ha 이상 ○ 2.0ha 이상	○ 1.5 ~ 0.7ha ○ 2.0 ~ 1.0ha	○0.7ha 이하 ○ 1.0ha 이하	○ 0.2미만 ○ 0.3미만
화훼	○ 1ha 초과 (절화류) ○ 0.5ha 초과 (분화류)	○ 0.6ha 이상 ○ 0.3ha 이상	○ 0.6 ~ 0.3ha ○ 0.3 ~ 0.2ha	○ 0.3ha 이하 ○ 0.2ha 이하	○ 0.1미만 ○ 0.1미만
채소 특작	○ 2ha 초과 (시설)	○ 1.0ha 이상	○ 1.0 ~ 0.5ha	○ 0.5ha 이하	○ 0.2미만
	○ 2ha 초과 (노지/복합농) ○ 5ha 초과 (노지/전업농)	○ 1.5ha 초과 ○ 3ha 초과	○ 1.5 ~ 0.5ha ○ 3 ~ 1.5ha	○ 0.5ha 이하 ○ 1.5ha 이하	○ 0.3미만 ○ 0.5미만
	○ 7ha 초과(인삼)	○ 4.0ha 초과	○ 4.0 ~ 1.5ha	○ 1.5ha 이하	○ 0.5미만
축산	○ 한우 170두 ○ 젖소90두 ○ 돼지 25백두 ○ 닭 9만수 초과	○ 한우 100두 ○ 젖소 50두 ○ 돼지 15백두 ○ 닭 5만수이상	○ 한우 100 ~ 50 ○ 젖소 50 ~ 30 ○ 돼지15 ~ 5백 ○ 닭 5 ~ 2.5만	○ 한우 50 이하 ○ 젖소 30 이하 ○ 돼지 5백 이하 ○ 닭 2.5만 이하	○ 15미만 ○ 10미만 ○ 160미만 ○ 8천미만

* 표에 해당 품목이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을 적용하나 유사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이 경영규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가능

※ 아래 신청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신청서(인턴용)

2021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신청서(인턴용)

1. 인적사항(필수항목)

성명(성별)	*홍OO*	성별	*남/여*	생년월일	*예시) 19900701 (띄어쓰기 없이 기재)*
연 락 처 (휴대폰)	*예시) 03112341234 / 01012345678 (띄어쓰기 없이 기재)*			이 메 일	
현 거주지	***우편번호 검색(DB활용)***				
현황 (복수응답 가능)	☐ 농고 재학중 ☐ 농고 졸업생 ☐ 농대 재학중 ☐ 농대 졸업생 ☐ 일반고 재학중 ☐ 일반고 졸업생 ☐ 일반대 재학중 ☐ 일반대 졸업생 ☐ 독립경영예정자 ☐ 기타( )				
우선선정 유무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신청 ☐ 전자상거래, 네트워크관리, 빅데이터 분석 등 비대면 업무 자격증 보유				
취업취약계층 해당 유/무 (복수응답 가능)	☐ 장애인 ☐ 결혼이민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성매매 피해자 ☐ 갱생보호대상자 ☐ 노숙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1인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 해당없음

2. 자격사항

자 격 명	급(점)수	발 행 처	취 득 년 월
			YYYY/MM/DD

3. 주요경력

직 장 명	근 무 기 간	최 종 직 위	담 당 업 무
	YYYY/MM ~ YYYY/MM		
	YYYY/MM ~ YYYY/MM		

4. 인턴근무 개요

채용희망 법인명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인턴희망 직무	☐ 경영전략·기획 ☐ 생산실무/관리 ☐ 사무관리(노무·세무·회계 등) ☐ 상품.기술개발 ☐ 유통·마케팅(홍보·영업.판매 등) ☐ 기타( )		
인턴희망 분야	☐ 쌀 ☐ 과수 ☐ 화훼 ☐ 채소 특작 ☐ 축산		
인턴희망 품목	※ 직접 작성 **(콤보박스)** <품목분야 예시> ■ 식량작물(벼, 맥류, 콩, 밀 등) ■ 과수(포도, 사과, 배 등) ■ 채소(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딸기, 참외, 수박 등) ■ 화훼(꽃 등) ■ 축산(한우, 젖소, 돼지, 닭, 양봉 등) ■ 특작(버섯 등) ■ 스마트팜 농가 ■ 6차산업 인증농가		
희망업무 내용	※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		
희망지역	※ 광역시/도, 시/군까지 작성 ***DB활용***	희망근무기간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숙박 희망여부	☐ 희망 ☐ 미희망	인턴희망 기간(월)	월
기타 사항	※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		

5. 자기소개서

1. 현재까지 겪었던 어려운 상황 중 가장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보는 나의 핵심가치

2. 영농 창업을 희망하는 동기 및 의지

3. 영농 취·창업 계획 ※ 가능한 세부적으로 작성, 구체성이 부족할 경우 미선발

- 취·창업 희망유형: 취업 또는 창업 중 선택
- 취창업 목표시기
- 취창업 주요 분야 및 세부내용
- 취·창업 시 필요사항 및 확보계획(자금, 기술 등)

4. 인턴근무에 대한 각오

6. 인턴 근무계획

□ 인턴근무 목표

□ 인턴 근무 이후 영농 취·창업 시 활용 방안

2021년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지원받고자 첨부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의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 아래 신청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은 **직접 수기**로 작성 후 스캔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신청 시 파일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2]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신청서(법인용)

접수번호	*미 표 기*

2021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신청서(법인용)		
사업참여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대한 해당유무		
① 정부.지자체의 유사사업(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사업자 (단, '20년 일자리안정자금 제외)	□해당	□해당없음
②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제재 중인 법인	□해당	□해당없음
③ 희망배치를 요구한 청년과 해당 법인의 법인 대표 등 임원 및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여부	□해당	□해당없음
④ 과거 고의적 지침 위반, 불이행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반환처리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농업법인	□해당	□해당없음
⑤ 농림사업자금의 부당사용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법인	□해당	□해당없음
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농업법인	□해당	□해당없음
우선 선정 기준 해당유무		
① 청년 희망직무 부여 예정자(비대면 마케팅 등)	□예정	□해당없음
②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	□해당	□해당없음
③ 독립경영예정자 실무수습 요청 농업법인	□해당	□해당없음
④ 농촌지역에 소재한 농업법인(농업식품기본법 제3조5항)	□해당	□해당없음
⑤ 선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신지식농업인, 농업마이스터, 현장실습장)	□해당	□해당없음
⑥ 스마트팜 시설을 보유한 농업법인	□해당	□해당없음
⑦ 사회적 농업 경제조직	□해당	□해당없음
⑧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농업법인	□해당	□해당없음

※ 위의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 선정취소 등 불이익 감수

업체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예시: 701201)*
법인등록번호	-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
사업자등록번호	- -	설 립 일	
소 재 지	법인주소	***우편번호)DB활용***	
	채용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 E-mail :	
	교육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팩스: E-mail :	
업종 분야	□ 생산 □ 식품가공 □ 유통 □ 판매 □ 6차산업 □ 영농자재 생산·공급(종묘 포함)□ 기타		

주생산 분야	□ 쌀 □ 과수 □ 화훼 □ 축산 □ 채소 □ 특작	주생산 품목	※ 직접기입	필요 직무분야 (복수선택 가능)	경영전략 기획 ( )
					생산실무/관리 ( )
규모					사무관리 (노무·세무·회계 등) ( )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4대보험 지급대상자만				
숙박가능여부 및 숙박형태	□ 가능 □ 불가				상품.기술개발( )
	□ 일반주택 □ 컨테이너 □ 아파트 □ 비닐하우스 □ 식당 □ 기타( )				유통.마케팅 (홍보·영업·판매 등) ( )
숙박 특이사항	예시: 샤워시설 공동이용				영업.판매 ( )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백만원				기타 ( )
인턴활용기간	월 ~ 월			희망인턴수	명 ※1~3명까지 가능
희망 인턴명	※법인에서 희망하는 인턴이 있는 경우				

2021년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지원받고자 첨부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의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 첨부서류 필수 제출

필수제출	해당법인만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 1부 ④ 2개년 납세(근로소득세) 사실증명서 1부 ⑤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이행 확약서 1부 ⑥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⑦ (공고일 이후 발행)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⑧ 4대보험 가입자명부	⑨ 스마트팜 '준공 후 안내문' 사진 또는 복합환경제어기 계약체결서 등(해당자) ⑩ 등기부등본 상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희망인턴 요구 시),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해당자) ※ 우선선정 기준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서식 3]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이행 확약서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이행 확약서

본 법인은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함께 시행하는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준수사항 미이행 적발 시 지원대상 자격 취소 및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업체명 :

대 표 :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서식4-1] 정보제공 및 개인정보 동의서(인턴용)

정보제공 및 개인정보 동의서

본인은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본인이 제출한 개인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농업법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2항
2.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사무실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매출액 등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사항
3.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업법인 취업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 위탁·제3자 제공동의>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농업법인)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 : 사업 대상자 거주의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Agrix 시스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인력포털 등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지원 대상자에게 농림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2. 이용 목적
○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의 중복수혜, 부정수급, 정산에 관한 업무
○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항
○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 기타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
3.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사항
4.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업법인 취업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동의해야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2021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서식4-2] 정보제공 및 개인정보 동의서(법인용)

정보제공 및 개인정보 동의서

본 경영체는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본 경영체가 제출한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농업법인)의 법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2항
2. 수집항목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사무실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매출액 등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사항
3.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업법인 취업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 위탁·제3자 제공동의>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신청 대상자(농업법인)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 : 사업 대상자 거주의 시.도, 시.군.구, 농림축산식품부, Agrix 시스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인력포털, 농고·농대 등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지원 대상자에게 농림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인턴)
2. 이용 목적
○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및 매칭결정에 관한 업무
○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의 중복수혜, 부정수급, 정산에 관한 업무
○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사항
○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 기타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
3.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사항
4.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업법인 취업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동의해야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2021 년 월 일

경영체명

대 표 자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서식5]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근로계약신고서

2021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근로계약신고서

* 인턴 1명당 1부씩 작성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일반전화)		전화번호(휴대폰)	
	소재지			
인턴 채용현황 (최대3명)	성 명		생년월일	
	근로기간	. . . ~ . . .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2021년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인턴을 채용하였음을 신고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근로계약서(서식8) 1부.
2. 채용된 인턴의 4대 보험가입증명서(가입자명부 포함) 1부.
3. 인턴자격확인서(서식9) 1부.
4. 인턴 정보제공 동의서(서식3-1) 1부.
5. 인턴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10) 1부.
6. 인턴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인턴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1부.
8. 인턴 사업자등록여부 사실증명서 1부.

※ 상기의 첨부서류 미제출 또는 증빙 불가한 서류제출의 경우 사업 선정 취소.

[서식6] 농업법인 취업지원금 신청서

2021년 농업법인 취업지원금 신청서

* 인턴 1명당 1부씩 작성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일반전화)		전화번호(휴대폰)	
	소재지			
인턴 채용현황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이메일	
	근로기간	. . . ~ . . .		
	해당 항목 체크 후 날짜 기입 □ 인턴 진행 중 □ 정규직 전환 또는 전환 예정(정규직 전환일) : . . . □ 퇴사(퇴사일) : . . .			

지원금 신청	구분	월	월	월	비고
	원천징수부 급여 (비과세 포함)	원	원	원	
	지원금 신청액	원	원	원	
	지원금 합계	원			

계좌이체의뢰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021년 농업법인 취업지원금을 지급받고자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취업지원금 신청서 1부.
   ※ 지원금 신청액은 원천징수부 급여 기준으로 작성
2.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원본대조필) 1부.
3. 급여지급 증빙자료(인턴 명의 인터넷뱅킹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입금내역 증빙서류) 1부.

※ 상기의 첨부서류 미제출 또는 증빙 불가한 서류제출의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예외사항 발생 시 추가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서식7] 계좌이체의뢰서

계 좌 이 체 의 뢰 서

1. 금 액 : 금 원정(₩)

2. 내 역 : '21년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지원금

상기 금액을 아래 예금계좌에 입금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래은행 : *법인 거래은행 기입*

○ 계좌번호 : *법인 거래은행 계좌번호 기입*

○ 예금주명 : *법인통장 예금주명 기입(법인명)*

○ 의 뢰 자

- 업 체 명 :
- 사업자번호 :
- 대 표 : (인)

[서식8]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이행점검표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이행점검표

점검일자 : . . .( )

점검자		점검방법	현장방문/유선/기타( )
점검대상(인턴)		연락처	

1 경영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인턴	(성명)	채용 직무	
	(부서)		
	(직위)		
지원분야	□ 경영전략·기획 □ 생산실무/관리 □ 사무관리(노무·세무·회계 등) □ 상품.기술개발 □ 유통·마케팅(홍보·영업.판매 등) □ 기타( )		
지원기간	년 월 일~ 월 일	지원현황(개월수)	개월

2 점검내용

점검항목	점검내용 및 결과	결과
복무현황	·인턴은 현재 해당 법인에 재직 중인가? □ 재직 중 □ 퇴사(사유 :)	□적합 □부적합
수행업무	·인턴의 최근 3개월 내 주요 수행업무는?	□적합 □부적합
급여수급현황 *시기, 금액 수당 등 종합점검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가?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전혀 그렇지 않다	□적합 □부적합
	·월 급여액은? (만원/월)	□적합 □부적합
기타/종합의견 (애로사항, 특이사항 등)	* 복지혜택 및 인턴활동의 교육효과, 불편사항 등에 대해 종합 확인	

[서식9] 인턴 근로계약서

인턴 근로계약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업법인 취업지원"를 진행함에 있어, 인턴근무에 필요한 근무조건에 대하여 _____(이하 채용법인이라 함)과(와) _____(이하 "인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___시___분부터 ___시___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__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__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원**(매월 고정수당)**

  *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및 복리후생적 수당 등은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

** '21년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 → 월급 기준(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209시간) 1,822,480원

- 상여금 : 있음 ( ) _____원, 없음 ( )
- 기타급여 : 있음 ( ), 없음 ( )

  · _____원, _____원

  · _____원, _____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단, 일부 현금으로 지급된 내역의 경우 '현금지급확인서' 등 추가증빙서류 제출

7. 연차유급휴가 및 초과근무수당 등

- 주휴일, 근로자의 날, 연차유급휴가, 생리유급휴가, 산전 후 유급휴가,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채용법인) 사업체명 : (전화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청년인턴)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10] 인턴 자격확인서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인턴 자격확인서

1 경영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인턴	(성명)	채용 직무	
	(부서)		
	(직위)		
지원기간	년 월 일~ 월 일 (개월)		

2 확인내용

사업참여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대한 해당유무		
① 희망배치를 요구한 청년과 해당 법인의 법인대표 등 임원 및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여부(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해당	□ 해당없음
② 인턴신청일 현재 취업 여부(건강보험득실 확인서 제출)	□ 취업	□ 미취업
③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사업자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 등록	□ 미등록
④ 직접일자리사업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서식11 제출)	□ 동의서 제출	
⑤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중인 자	□ 근무중	□ 해당없음
⑥ 인턴신청일 현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지 여부 (마지막 학기 재학 중 제외)	□ 재학 중	□ 휴학 또는 졸업
⑦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을 과거에 지원받은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정부·지자체의 유사사업(인건비 지원) 지원대상자	□ 해당	□ 해당없음
⑨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선정이 취소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 위의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 선정취소 등 불이익 감수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법인 _____과(와) 인턴 _____은 위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_____법인 대표: (인)
인턴: (인)

[서식11] 직접일자리사업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인턴)

직접일자리사업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

(앞 면)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0.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20 . .			
그밖의 경력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1 본 신청서는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기관장 귀하

[서식12] 인턴 변동 신고서

인턴 변동 신고서

본 경영체는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의 지원 경영체(농업법인)의 채용 인턴이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음을 신고하오며, 재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세부내용				
업체명						
인턴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채용분야	□ 경영전략·기획 □ 생산실무/관리 □ 사무관리(노무·세무·회계 등) □ 상품.기술개발 □ 유통·마케팅(홍보·영업.판매 등) □ 기타( )				
	입사일		퇴사일			
변동 사항	변동내용	*권고사직, 자진퇴사 등*				
	사유					

2021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귀하

[서식 13] 농업법인 취업지원 인턴 수료 확인서

농업법인 취업지원 인턴 수료 확인서

본 인턴의 20 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함께 시행하는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수료를 확인합니다.

대상	성명(성별)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휴대폰)				이 메 일	
	현 거주지					
인턴 활동	대상법인명					
	활동기간					

2021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참고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ㅇ 영농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영농정착을 제고하고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 ㅇ 청년층의 실무경험 및 정보 제약으로 인한 영농정착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무경험을 통한 전문능력 제고

□ 지원근거

- ㅇ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지원)

□ 사업내용

- ㅇ (사업대상)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미취업자,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업법인
  - *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경영규모 기준 '전업농' 이상의 법인, 선도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등
- ㅇ (지원내용) 청년을 수습 채용한 농업법인에 1인당 월급여의 80% 이내 (월 최대 161.6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법인당 최대 3명)
  - *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의 80%(단, 월 급여는 '21년 최저임금 이상)
  - ** 지원실적 : '18) 180명(115개소) → '19) 216명(131개소) → '20) 202명(116개소)
- ㅇ (소요예산) 1,957백만원 (인건비1,939(200명×6개월×202만원×80%)+운영비 18)
  - *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소진시 지원불가
- ㅇ (사업기간) 2021. 4 ~ 12월
- ㅇ (사업시행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ㅇ (추진절차) 계획수립·지침시행(농림부) → 대상자 공모·신청·접수(농정원) → 지원대상 평가·선정·집행(농정원) → 정산·사후관리(농정원)

□ 추진일정

- ㅇ '21년도 사업대상자(법인, 청년) 선정 공모('21.4.19~) 및 선정·매칭 추진('21.5월~)

홍천군 공고 제2021-1069호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1. 5. 26. ~ 6. 15.(20일)

3. 개정이유

가.「도로법」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규정한 점용료의 감면 조항 신설.

나. 현재 도로점용료 등의 산정 시 점용료 등의 부과 하한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다. 도로점용료의 징수 등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부과 하한금액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점용료의 감면 조항 신설 및 조항 변경(안 제5조제1항, 제2항)

-「도로법 시행령」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감면 조항 신설

나.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 하한금액 상향 조정(안 제6조제3항)

- (현행) 5,000원미만 → (개정) 1만원미만

다. 법제규정에 따른 자구수정 및 근거규정 현행화.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참조: 건설방재과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건설방재과
- 연락처: 전화 033)430-2875 팩스 033)430-286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홍천군조례 제 호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홍천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을 "하나「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으로, "군수"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도로법 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66조제1항"을 "「도로법」 제6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30조 제3항"을 "제30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000원미만"을 "1만원미만"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부과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중 "법 제66조제2항"을 "「도로법」 제66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15 조례 제1868호, 2008. 3. 20 조례 제2015호>	제1조 (목적)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홍천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 ----------.
제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어느 하나와「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라 군수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 ---------- 하나「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69조제2항에 따른 ----------.
제5조 (점용료의 감면) <신 설>	제5조 (점용료의 감면) ①「도로법 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 제66조제1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② ----------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 ---------- ----------제30조제5항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단서 신설>	③ ---------- 1만원미만----------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제66조제2항---------- ----------.

홍천군 공고 제2021-1081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홍 천 군 수

1. 노선지정 내용

읍면	도로 종류	노선명	노선 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 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 (지정·변경) 사유
				기점	종점			확장 너비	포장 너비	
내면	농어촌 도로	내면 208호선	208호	내면 자운리 1485 번지	내면 자운리 1085-419 번지	2.065	자운리	6.5 (m)	5.0 (m)	편입지번, 사업기간 변경

2. 사업기간 : 2020. 03. ~ 2022. 6.
3. 사업시행자 : 홍천군수
4. 자금계획 : 1,500백만원
5.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홍천군 경제국 건설방재과 도로관리담당
7. 설계도서 : 생략(홍천군 건설방재과 도로관리담당에 비치)
8. 편입토지조서 : 별첨

내면 자운3리 노경선(내면20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편입토지조서

* 내면 자운3리 노경선(내면20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읍면	소재지 리	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이해관계인 성명	이해관계인 주소	비고
계						2,952,964	26,389					
1	내면	자운리	1485		구거	17,964	860	국(국*교*부)				
2	내면	자운리	1094-1		도로	1,296	104	국(국*교*부)				
3	내면	자운리	산26	산26-1	임야	118,810	1,971	광*탁*지*광*충*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6-3			531					
				산26-4			250					
4	내면	자운리	1074	1074-1	전	340	295	최*수	강원도 홍천군 내면 경천길			
5	내면	자운리	1075	1075-1	전	3,127	873	탁*석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6	내면	자운리	1076	1076-1	전	413	12	탁*석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7	내면	자운리	1090	1090-1	전	1,121	232	홍*군				
8	내면	자운리	1091-5		임야	6,381	2,307	정*표	강원도 홍천군 내면 경천길			
9	내면	자운리	1091		전	14,154	51	정*표	강원도 홍천군 내면 경천길	홍*축*임*동*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5길	근저당권
10	내면	자운리	1091-8	1091-14	전	25,350	2,902	이*남 외5인				
								이*남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77번길			1/6지분
								이*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08			1/6지분
								박*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54길 26			1/6지분
								이*자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775번길 51-8			1/6지분
								이*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77번길			1/6지분
								이*각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삼작로268번길 41-3	기*보*기*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1/6지분
11	내면	자운리	산24-1	산24-3	임야	4,066	204	홍*군				
				산24-4			82					
				산24-5			33					
12	내면	자운리	1091-9	1091-17	전	20,366	4,686	홍*군				
13	내면	자운리	산23	산23-1	임야	78,347	170	광*탁*기*광*충*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3-2			43					
14	내면	자운리	산50-1	산50-38	임야	2,585,688	4,615	국(산*청)				
15	내면	자운리	1085-264	1085-425	전	2,570	202	홍*군				
16	내면	자운리	1085-204	1085-414	전	16,314	40	홍*군				
17	내면	자운리	1085-221		도로	3,326	50	국(농*축*식*부				
							308					
							238					
							1,232					
18	내면	자운리	1085-156		구거	18,331	497	국(농*축*식*부)				
19	내면	자운리	1085-203	1085-413	전	529	439	홍*군				
20	내면	자운리	1085-280	1085-421	전	9,678	2,561	홍*군				
21	내면	자운리	1085-214	1085-416	대	797	37	홍*군				
22	내면	자운리	1085-215	1085-417	대	539	11	홍*군				
23	내면	자운리	1085-216	1085-418	전	625	12	이*철 외 1인				
								이*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77-122			1/2지분
								홍*군				1/2지분
24	내면	자운리	1085-374	1085-424	전	9,576	82	김*호 외1인				
25	내면	자운리	1085-279	1085-420	전	1,390	102	홍*군				
26	내면	자운리	1085-343	1085-423	전	2,107	108	홍*군				
27	내면	자운리	1085-222	1085-419	전	9,759	249	홍*군				

홍천군 공고 제2021-1088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홍 천 군 수

1. 사업명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중방대리 406
3. 도로길이 : 49m
4. 도로너비 : 4.0m
5. 도로면적 : 214㎡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공부면적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비고
서면 중방대리	406	답	621	73	함*만	

위 치 도	축척 : NONE

현 황 도	축척 :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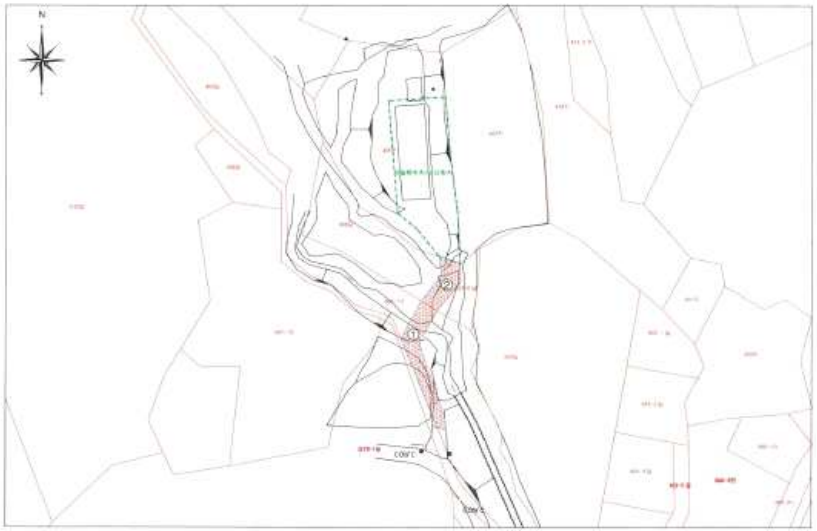

구 적 표

(단위 : ㎡)

구분	지 번	지목	지 적	신 청 면 적	비 고
①	589-1	구	48,342.0	141.0	도로지정
②	406	답	621.0	73.0	
계				214.0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589-1, 406번지

홍천군 공고 제2021-1089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홍 천 군 수

1. 사업명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762-6
3. 도로길이 : 48.1m
4. 도로너비 : 5.3 ~ 7.0m
5. 도로면적 : 293㎡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남면 화전리	762-6	답	5,225	293	정*석	

위치도 및 현황도

현황도 축척 <임의>

구 적 표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제외면적	용도구분	비 고
			농 지	도 로	계			
762-6	답	5,225	962	293	1,255	3,970	계획관리	
소 계		5,225	962	293	1,255	3,970		

위치도 축척 [V] 1/1,200 , [ ] 1/2,400

홍천군 공고 제2021-1093호

「자체 일자리사업(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행정보조)」
참여자 모집 공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자체 일자리창출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홍 천 군 수

○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모집 인원	참여기간	근무지	근무내용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행정보조	1명	**2021. 6.7.~12.31.**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 1일 6시간 주5일 - 업무보조(전산입력)

※ 일모아시스템 정보연계일정에 따라 선발일 및 참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1.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홍천군민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기실업자, 한부모가정, 휴폐업자) 우선선발

2. 모집기간: 2021. 5. 27.(목) ~ 2021. 6. 3.(수)

3. 선발일자: 2021. 6. 4.(금) 예정

4. 신청장소: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어르신복지담당(☏ 033-430-2123)

5. 신청서류

가. 자체 일자리사업 신청서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6. 근무여건

가. 임금단가: 시간당 8,720원(2021년 최저임금)

나. 4대 사회보험 가입

다. 주휴수당

-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주유급휴일을 부여

라. 연차 유급휴가

- 근무하기로 정한 1월 간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7. 선발방법

- 2021년 자체 일자리창출사업 선발기준 점수표 및 선발순서에 의하여 일모아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발

8. 우선선발 제한자

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세대원 재산의 합이 3억원 이상인 자

나. 반복참여자

9. 참여 배제 대상자

가. 중복참여자
나. 정당한 사유(질병, 군복무, 출산 등) 없이 중도 포기한 자
다. 1세대 2인 참여자
라.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마.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바.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사. 사업 참여 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0 및 '21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아. 사업 참여자 선발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자.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10.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1년 월 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33-430-2109)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는 파기할 예정입니다.

자체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참여희망사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자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실 업 기 간	20 . . . ~ 20 . .		
그 밖의 경력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1 본 신청서는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홍천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공무원연금내역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민원인 (서명 또는 인)

선발기준 점수표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비고
총점 80점			
세대원수 (동거인 제외)	4명이상, 3명, 2명, 1명	**12** (12,9,6,3)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10** (10,0)	・해당 법률규정: 아래참조
저소득층	여, 부	**20** (20,0)	・중위소득 65% 이하
장애인	여, 부	**5** (5,0)	
한부모	여, 부	**5** (5,0)	
장기실업자 휴폐업자(20.2.23.이후)	여, 부	**5** (5,0)	・장기실업자: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일모아시스템)
재산기준 (부동산+차량)	재산액 3,000만원 미만	**20**	
	재산액 7,000만원 미만	**14**	
	재산액 15,000만원 미만	**9**	
	재산액 20,000만원 미만	**6**	
	재산액 30,000만원 미만	**3**	
	재산액 30,000만원 이상	**0**	
감점사유 -50점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참여자 기타 자치단체 판단	최근3년간 1년 참여자	**-10**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최근3년간 2년 참여자	**-20**	
	최근3년간 연속 참여자	**-30**	
	최근 3년간 참여이력 없음	**3**	
	공공일자리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	**-10**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 중 근무태만, 사업포기자 등	**-10**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②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는 실직에 포함되지 않음

③ 세대주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세대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세대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 구 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 환 장 소 (주소와다른 경우 기재)		

반 환 요 구 서 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홍천군 공고 제2021-1104호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보상청구에 따른 공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시행에 따라 과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청구가 접수되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3조6항에 의거 보상청구내용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8일

홍 천 군 수

1. 하 천 명 : 홍천강(국가하천)

2. 공고기간 : 2021. 5. 28. ~ 2021. 6. 14. (17일간)

3. 보상청구 내용

하천명 (등급)	편입토지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당시	청구 당시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홍천강 (국가 하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58-1	하천	1,230.0	대	하천	김*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강 (국가 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8-7	하천	776.0	전	하천	권*옥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김*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권*옥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한*택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박*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최*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인*란	충남 서산시 안견로*			
							김*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염*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하천명 (등급)	편입토지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당시	청구 당시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김*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10	전	3,749.0	전	하천	김*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홍천군 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	근저당권 지상권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산84	임야	69,598.0	임야	하천	김*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산86	임야	55,537.0	임야	하천	김*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9	유지	1,254.0	유지	하천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함*원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종로세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압류
									주식회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강제경매개시결정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9-1	유지	476.0	유지	하천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함*원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종로세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2	압류
									주식회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760, 502, 503호	강제경매개시결정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9-7	유지	1,798.0	유지	하천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함*원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종로세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압류
									주식회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강제경매개시결정

하천명 (등급)	편입토지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당시	청구 당시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12	유지	2,238.0	유지	하천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함*원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종로세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압류
									주식회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강제경매개시결정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12-1	유지	17.0	유지	하천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함*원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종로세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압류
									주식회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강제경매개시결정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113-11	임야	367.0	임야	하천	박*응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성*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906-5	하천	239.0	답	하천	이*대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906-6	하천	1,260.0	답	하천	이*대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오안리	산118	임	67,438.0	임	하천	박*준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남면 일노리	산8	임	34,314.0	임	하천	김*수	강원도 홍천군 남면 한서로*	홍천군 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	근저당권설정
							현*희	강원도 홍천군 남면 한서로*	홍천군 산***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	지상권설정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남면 일노리	산10	임	39,669.0	임	하천	고*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하천명 (등급)	편입토지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당시	청구 당시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산22	임	77,950.0	임	하천	김*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전*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안*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이*준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조*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권*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산23	임	47,107.0	임	하천	김*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전*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안*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권*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9-5	도	139.0	도	하천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함*원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함*웅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3*	종로세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압류
									주식회사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강제경매개시결정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산87	임	17,058.0	임	하천	김*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산89	임	41,950.0	임	하천	김*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산126-2	임	7,465.0	임	하천	김*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314	천	965.0	천	하천	오*훈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치로 221, 2층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산42	임	775.0	임	하천	정*덕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하천명 (등급)	편입토지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당시	청구 당시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이*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산42-1	임	9,059.0	임	하천	정*덕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이*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산42-3	임	3,971.0	임	하천	정*덕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이*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노일리	산207	임	110,080.0	임	하천	황*희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이*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차*운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근저당권설정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산11	임	114,248.0	임	하천	김*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발이봉남로*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산13	임	178,413.0	임	하천	김*민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용연로*			
							조*임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2길*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리	산44	임	113,355.0	임	하천	염*기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굴지강변로*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2	전	3,825.0	전	하천	손*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이*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박*두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로*			
							황*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내로62*			
							석*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하천명 (등급)	편입토지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당시	청구 당시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송*숙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심*택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양*태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백*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손*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백*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이*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신*순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이*세	서울시 중구 신당동*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9	전	16,889.0	전	하천	손*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이*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박*두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창촌로*			
							황*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내로*			
							석*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송*숙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심*택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양*태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백*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하천명 (등급)	편입토지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당시	청구 당시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손*수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원적로*			
							백*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이*근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신*순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이*세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19	전	232.0	전	하천	백*원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20	전	1,695.0	전	하천	김*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한*택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박*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최*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인*란	충남 서산시 안견로*			
							김*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권*옥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권*옥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염*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			
							김*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130-3	임	550.0	임	하천	백*원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130-13	임	160.0	임	하천	백*원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332-10	임	3,351.0	임	하천	한*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하천명 (등급)	편입토지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당시	청구 당시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14	임	8,331.0	임	하천	한*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15	임	5,554.0	임	하천	한*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17-4	임	26,021.0	임	하천	김*희	경기도 파주시 송화로*	신*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근저당권설정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산35-18	임	591.0	임	하천	서*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619-1	답	414.0	답	하천	신*선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33-6	전	5.0	전	하천	박*옥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96-3	답	43.0	답	하천	박*원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향교골길*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268-1	답	44.0	답	하천	서*녀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장터길*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역내리	496	답	2,957.0	답	하천	이*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샘마을길*			
홍천강 (국가하천)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산93-1	임	25,587.0	임	하천	황*호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곡수시장길*			

[별지 제2호 서식]

□ 토지조서 □ 보상청구 에 대한 의견서				
편입토지의 표시	위치			
	면적	㎡	지목	
등기부상 소 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 견 서 제 출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견 내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등	의견서 제출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의견서 제출인의 의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기부 등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홍천군 공고 제2021-1106호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홍천군 군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28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5. 31 ~ 6. 20.(20일)

3.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개정(2020.12.29.)으로 주민세의 명칭 및 과세체계가 일부 변경되었기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홍천군 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방세법 개정(2020.12.29.)에 따른 용어 정비

(현행) 주민세 "균등분" → (개정) 주민세 "개인분"

(현행) 주민세 "재산분" → (개정) 주민세 "사업소분"

5.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재무과
- 연락처: 전화 033)430-2350 팩스 033)430-235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조례 제2021- 호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주민세 균등분 세율)"을 "(주민세 개인분 세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을 "제78조"로,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주민세 재산분 신고의무)"를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민세 균등분 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민세 균등분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제3조(주민세 개인분 세율) ---------- 제78조---------- 개인분 ----------.
제4조(주민세 재산분 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① ---------- 사업소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홍천군 공고 제2021-1107호

홍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홍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8일

홍 천 군 수

1. 자치법규안명: 홍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1. 5. 31 ~ 6. 20. (20일)
3.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개정(2020.12.29.)으로 주민세의 명칭 및 과세체계가 일부 변경되어었기에 홍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사항에 맞춰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방세법 개정(2020.12.29.)에 따른 용어 정비
(현행) 주민세 균등분 → (개정) 주민세 개인분
(현행) 주민세 재산분 → (개정) 주민세 사업소분

5.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 재무과
- 연락처: 전화 033)430-2350 팩스 033)430-235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홍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홍천군 규칙 제2021- 호

홍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홍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5조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주민세(재산분)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관련)"를 "주민세(사업소분)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관련)"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균등분	제1절 개인분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개인분) ----------.
제2절 재산분	제2절 사업소분
제6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 사업소분----------(사업소분) ----------.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제49조---------- 같은 법 제50조----------(사업소분) ----------.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재하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사업소분) ---------- 법 제83조제6항----------.

[별지 제3호 서식]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제5조 관련)

○○연도 ○○월분

일련번호	성 명 (법인명)	주 소		비과세·감면 사 유	세 액	결 재		
		전화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10mm × 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 서식]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제6조제1항 관련)

○○연도 ○○월분

접수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적	세율	세액	납부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 서식]

주민세(사업소분)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과세물건	물건의 소재지	당 초 신 고 내 용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					결 재		
	주 소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사유	담당자	담당	과 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 서식]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제7조 관련)

○○연도 ○○월분

과세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면 적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계	결의일	결 재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60g/㎡)

홍천군 공고 제2021-1111호

아동학대 상담 조사 업무에 따른 CCTV 설치 행정예고

아동학대 조사 상담시 발생 할 수 있는 분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조사 상담실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공고기간 내에 홍천군청 행복나눔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01일

홍 천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 ❍ 아동학대 조사·상담 업무에 따른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 수렴

2. 근거법령
-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 아동학대 조사·상담 업무에 따른 CCTV설치

4. 설치 장소
- ❍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2층 상담실 : 1대

5. 공고기간 : 2021. 6. 01. ~ 2021. 6. 20.(20일간)

6. 공고방법 : 홍천군청 홈페이지(https://www.hongcheon.go.k)

7. 의견제출
- ❍ 제출기한 : 2021. 6. 20일 까지
-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 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하여야 함.
- ❍ 제출서식 : [붙임 파일] 참조
- ❍ 제 출 처 : 강원도 홍천군 행복나눔과
  - 우 편 : 홍천군 석화로 93
  - 전 화 : 033-430-2119
  - 팩 스 : 033-430-2109
  ※ 팩스전송 후 수신 여부 확인 전화 요망(033-430-2119)
-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기타사항
- ❍ 공청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행정예고로 갈음함.

아동학대 조사 상담실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사 업 명	아동학대 조사 상담실 CCTV설치 공사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홍천읍 너브내길 123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2층 아동친화드림 상담실				

홍천군 CCTV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1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홍천군 공고 제2021-1115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1년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6월 01일

홍 천 군 수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築堤)	호안(護岸)	기타	착공	준공		
검산천	서석면 검산리 검산천 소하천 정비사업	서석면 검산리 526	서석면 검산리 620-14	1,150	1,150		2021.6	2023.6	홍수피해로 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주민들의 안정된 영농생활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 위치도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9.8>

소하천정비시행계획

< 홍천군 > (2021년)

수계(水系)명	소하천 번호	소하천 명	소하천 총길이 (km)	유역(流域) 면적 (㎢)	계획하천폭 (m)	정비계획																	
						전체			정비된 부분			이번 시행									장래 계획		
						사업량(m)		사업비 (백만원)	사업량(m)		사업비 (백만원)	위치		사업량(m)		사업비 (백만원)		사업효과			사업량(m)		사업비 (백만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축제	호안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호안	국비	지방비	농경지 (ha)	건물 (동)	수질 (ppm)	축제	호안	
계																							
검산천	5-25	검산천	7.55	31.97	11~77	4,820	4,820	22,159	-	-	-	서석면 검산리 526	서석면 검산리 620-14	1,150	1,150		5,287	5		-	3,600	3,670	16,872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 소하천정비공사의 명칭
   나. 소하천정비공사의 목적 및 개요
   다. 소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라. 소하천정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1)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1)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바. 준공된 소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사. 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
2. 소하천정비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에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실시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4. 예정 공정표
5.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6.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정비에 관한 사항 등 소하천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편 입 용 지 조 서

서석면 검산리 검산천 소하천정비사업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번호	군, 면, 리	지번		(㎡)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92,710	51,979					
1	홍천 서석 검산	1181-9	도	1,066	14	국유지	국(건설부)			
2	"	620-13	임	22	22	한○진	서울시도봉구수유동			
3	"	620-14	임	347	90	국유지	국(건설부)			
4	"	620-1	임	152	152	한○진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최○숙 한○영 한○철 한○리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인수봉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검정로 경기도가평군하면조종희망로	상속에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5	"	1181-7	답	562	101	이○하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피리골길			
6	"	620-4	임	508	508	한○옥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7	"	1181-6	답	843	7	이○하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피리골길			
8	"	1210	구	344	16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9	"	1211	도	526	16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10	"	1212-2	답	2,540	880	한○옥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11	"	1212-1	답	1,707	108	한○옥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12	"	624-4	도	231	106	권○규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13	"	624-2	도	344	91	국유지	홍천군			
14	"	624-1	답	66	40	권○은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15	"	1213	답	2,853	451	원○문	강원도 양양군 서면 상평리			
16	"	1213-1	답	2,072	343	최○선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서○농업 협동조합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근저당권
17	"	1177	구	6,784	272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18	"	1191	답	2,240	795	안○자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19	"	1191-1	답	1,174	379	안○자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20	"	1191-2	답	701	271	김○겸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21	"	1190	도	571	18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22	"	1191-3	답	23	23	한국 농○촌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빛가람동)			
23	"	590	답	3,028	2,109	김○석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양○ 축산업 협동조합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근저당권 지상권

24	"	596-1	답	1,393	662	김○석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양○ 축산업 협동조합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근저당권 지상권
25	"	597-1	답	780	780	김○석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양○ 축산업 협동조합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근저당권 지상권
26	"	1141	답	1,185	2	김○석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양○ 축산업 협동조합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근저당권 지상권
27	"	1141-1	답	1,476	176	김○석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양○ 축산업 협동조합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근저당권 지상권
28	"	597-6	전	5,816	121	김○석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양○ 축산업 협동조합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근저당권 지상권
29	"	597-2	잡	559	255	김○석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30	"	532	임	11,342	1,739	강○영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31	"	525	답	6,811	1,209	강○영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32	"	525-1	답	49	49	한국 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33	"	526-2	전	9	9	한국 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34	"	525-2	구	91	91	한국 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35	"	532-2	임	38	38	한국 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36	"	526	전	1,968	1,968	강○영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37	"	522	답	5,253	4	안○학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길	홍○농업 협동조합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근저당권
38	"	523	임	10,393	361	안○학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길	홍○농업 협동조합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근저당권
39	"	1060	천	84,524	26,924	국유지	국(건설부)			
40	"	612	전	939	120	방○일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서○농업 협동조합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214	근저당권
41	"	608-3	답	1,419	1,120	김○준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	이○숙 서○농업 협동조합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용화산로 강원도홍천군서석면구룡령로	가압류 근저당권
42	"	608-8	답	1,419	954	류○순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효제곡길			
43	"	608-2	답	3,117	1,339	최○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44	"	608-1	전	526	389	김○철 김○철	강원도홍천군서석면검산리 강원도경기도평택시지산동			김○철 지분 2/3

										김○철지분1/3
45	"	608-6	도	1,516	8	국유지	홍천군			
46	"	604-3	도	347	39	국유지	홍천군			
47	"	604-1	임	4,607	2,440	원○문	강원도 양양군 서면 상평리			
48	"	1148-1	답	2,592	298	방○문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49	"	1148	답	1,394	906	방○문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50	"	1147	도	406	108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51	"	1146	구	350	69	국유지	국(농림축산식품부)			
52	"	1145	답	2,277	630	이○구 이○희 이○롱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길 경기도광주시오포읍마루들길 서울특별시중랑구용마산로			이○구 지분 8/12 이○희지분2/12 이○롱지분2/12
53	"	531-13	답	463	275	이○구 이○희 이○롱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길 경기도광주시오포읍마루들길 서울특별시중랑구용마산로			이○구 지분 8/12 이○희지분2/12 이○롱지분2/12
54	"	531-3	답	345	37	이○구 이○희 이○롱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길 경기도광주시오포읍마루들길 서울특별시중랑구용마산로			이○구 지분 8/12 이○희지분2/12 이○롱지분2/12
55	"	527-2	전	9,806	2,006	이○구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서○농업 협동조합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근저당권
56		527-1	전	796	41	최○명 윤○식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검산리			최○명 지분 300/629 윤○식지분329/629

홍천군 공고 제2021-111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서류의 열람 공고

도시계획도로(희망리 떡방앗간 ~ 경포대횟집)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신청건과 관련하여 「국토계획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전 서류의 열람을 공고하고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실시계획인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31.

홍 천 군 수

1. 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도시계획도로(희망리떡방앗간~경포대횟집)개설공사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37-4번지 일원	○ 도로개설 -L=99.0m, B=6.0m	홍천군수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2. 사 업 명 : 도시계획도로(희망리떡방앗간~경포대횟집)개설공사
3. 사 업 량 : 도로개설 L=99.0m, B=6.0m
4. 사업기간 : 2021. 4. ~ 2023. 12. 31.
5.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에 비치)
6. 열람 및 의견서 제출기간 : 2021. 5. 31. ~ 2021. 6. 14.(15일간)
7. 열람장소 : 홍천군청 경제국 도시교통과 도시시설담당(☎033-430-293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홍천군청 경제국 도시교통과 도시시설담당(☎033-430-29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명 : 도시계획도로(희망떡방앗간~경포대횟집)개설 공사
○ 토지소재지 :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편입면적	잔여지	소유자 주 소	소유자 성 명	관계자 주소	관계자 성 명	비 고
계			14,395.0	677.0	13,718.0					
1	405	도로	10,641.0	66.0	10,575.0		국			
2	137-2	도로	13.0	10.0	3.0		국			
3	140-5	도로	110.0	14.0	96.0		국			
4	137-3	대	345.0	24.0	321.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	차*현			
5	137-1	대	690.0	57.0	633.0		국			
6	137-4	대	444.0	274.0	170.0		국			
7	136-2	대	334.0	30.0	304.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	허*분			
8	127-1	대	205.0	48.0	157.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로*길 *	김*자			
9	127-2	대	192.0	14.0	178.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로*길 *	김*영			
10	128-3	대	251.0	3.0	248.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	장*인			
11	405-66	대	17.0	17.0	0.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로*길 *	김*영			
12	51-4	도로	346.0	59.0	287.0		국			
13	405-68	도로	30.0	13.0	17.0		국			
14	128-4	대	158.0	3.0	155.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로 **-**	조*용	춘천시 소양로*가 ***	춘천*** **조합	근저당권
15	405-69	대	10.0	10.0	0.0		국			
16	54-7	대	202.0	24.0	178.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	박*묵			
17	54-8	도로	354.0	7.0	347.0		국			
18	136-1	대	53.0	4.0	49.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	박*묵	홍천읍 희망리 ***-*	홍천*** **조합	지상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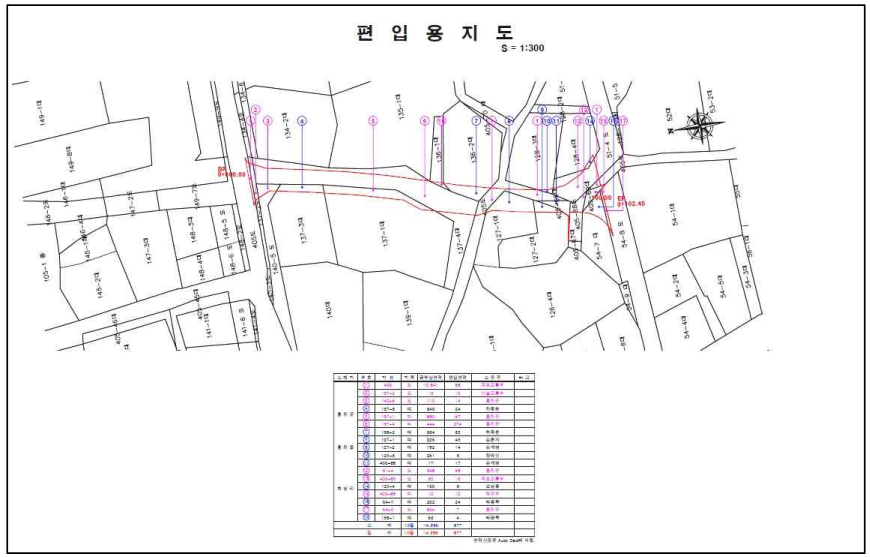

도시계획도로(희망리떡방앗간~경포대횟집)개설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의견서

사업명	**도시계획도로(희망리떡방앗간~경포대횟집개설공사**		
사업장 위치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37-4번지 일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업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홍천군 공고 제 2021 - 1121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홍천군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및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동 조례 제9조(공고)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5. 31.

홍 천 군 수

1. 공인의 등록 및 폐기일 : 2021. 06. 01.

2. 등록 및 폐기 사유 : 면 명칭 변경

3.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공 인 명	규격및서체	최초사용연월일 (폐기연월일)	인 영
신 조	영귀미면장인	2.1cm 정방형 난초체	2021.06.01.	
신 조	영귀미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cm 정방형 난초체	2021.06.01.	

구 분	공 인 명	규격및서체	최초사용연월일 (폐기연월일)	인 영
폐 기	동면재무관인	2.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2014.12.08. (2021.06.01.)	
폐 기	동면지출원인	2.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1992.02.01. (2021.06.01.)	
폐 기	동면물품관리관인	2.0cm 정방형 한글전서체	1992.03.01. (2021.06.01.)	
폐 기	동면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정방형 한글전서체	1992.12.01. (2021.06.01.)	
폐 기	동면 물품출납원인	1.8cm 정방형 한글전서체	1992.03.01. (2021.06.01.)	

홍천군 공고 제2021-1128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홍 천 군 수

1. 사업명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546-2 외 1
3. 도로길이 : 57m
4. 도로너비 : 4~6m
5. 도로면적 : 369㎡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남면 명동리	546-2	전	660	33	김정미	
	산43	임	4,959	266	이덕종	

(2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임 의>

현황도 축 척 <임 의>

홍천군 공고 제2021-1131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홍 천 군 수

1. 사업명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 26-3
3. 도로길이 : 36m
4. 도로너비 : 약 2.94m
5. 도로면적 : 106㎡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서면 대곡리	26-3	답	1,504	106	김*권	

(2면중 제2면)

위 치 도 축척 : NON SCALE

현 황 도 축척 : NON SCALE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30304-26822대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70g/㎡)

홍천군 공고 제2021-1132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홍 천 군 수

1. 사업명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대곡리 48 외 2
3. 도로길이 : 170m
4. 도로너비 : 약 6.01m
5. 도로면적 : 1,023㎡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서면 대곡리	48	전	3,174	344	김*권	
	26-3	답	1,504	46		
	26-1	전	6,443	633		

(2면중 제2면)

위 치 도 축척 : NON SCALE

현 황 도 축척 : NON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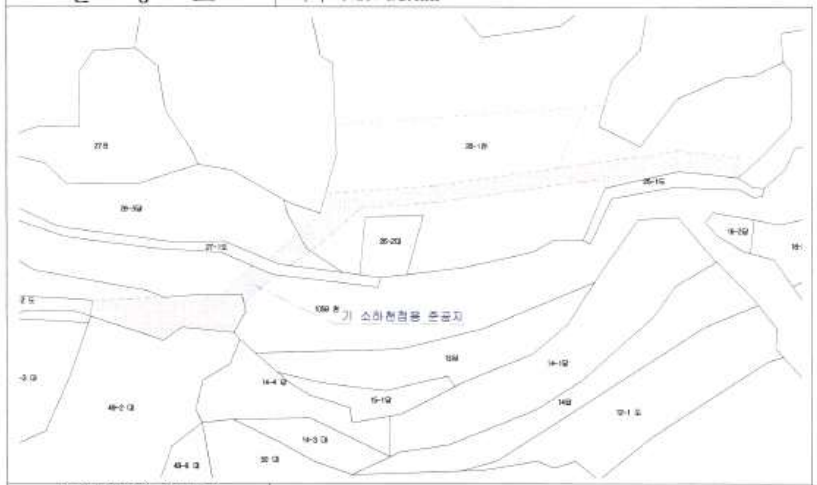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30304-26822대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70g/㎡)

홍천군 공고 제2021-1134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홍 천 군 수

1. 사업명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 784-1
3. 도로길이 : 약 10m
4. 도로너비 : 약 4.0m
5. 도로면적 : 25㎡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남면 화전리	784-1	답	470	25	이*두	

위 치 도 축척 : 임의

현 황 도 축척 : □1/600 , ■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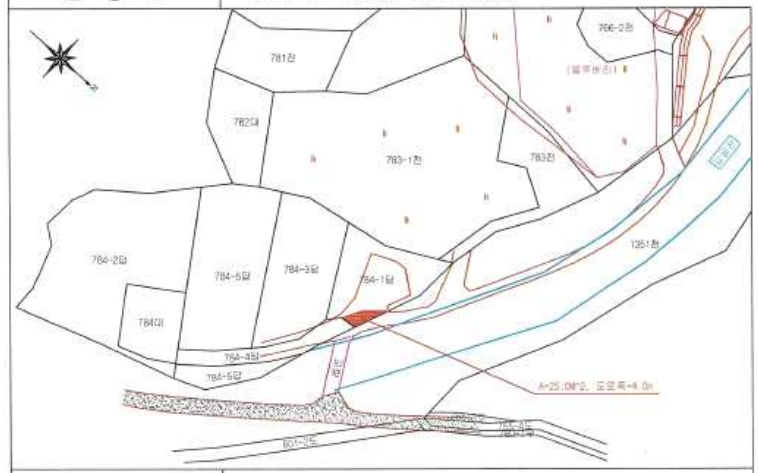

이해관계인과의 관련지번

홍천군 공고 제2021-1135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홍 천 군 수

1. 사업명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산60-2 외 3
3. 도로길이 : 97m
4. 도로너비 : 약 3.0 ~ 7.0m
5. 도로면적 : 487㎡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서면 팔봉리	산60-2	임	2,478	236	이*상	
	산60	임	14,663	8		
	157	전	859	4		
	157-4	전	239	239		

(2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임 의>

현황도 축 척 [ ] 1 / 600, [ ] 1 / 1,200

위 치 도 축척 : 임의

현 황 도 축척 : □1/600 , ■1/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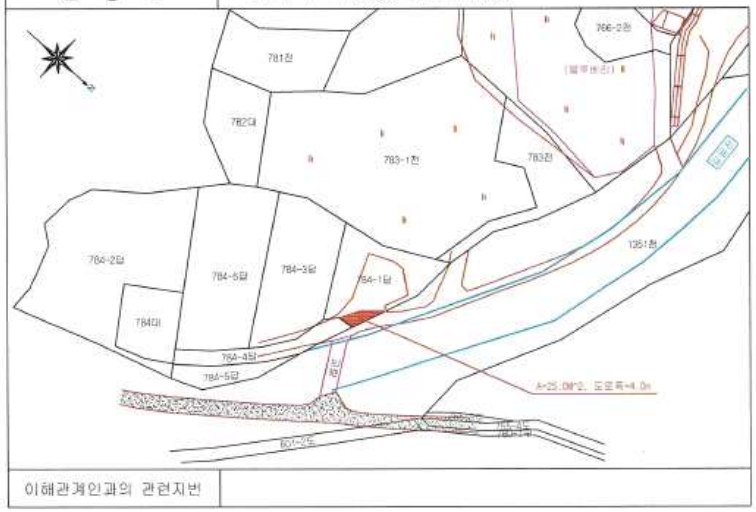

이해관계인과의 관련지번

홍천군 공고 제2021-1137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홍 천 군 수

1. 사업명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반곡리 257
3. 도로길이 : 16.3m
4. 도로너비 : 2.8~4.3m
5. 도로면적 : 53㎡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서면 반곡리	257	전	53	53	최*일	

위 치 도 축척 : NONE

현 황 도 축척 : 600

구 적 표

(단위 : ㎡)

구분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비고
①	257	전	53.0	53.0	도로지정
②	-	-	-	-	
계				53.0	

홍천군 공고 제2021-1138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변경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2일

홍 천 군 수

1. 공 고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550-3, 민전홍 외1인)
2. 건축위치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550-3번지
3.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550-3번지
4. 도로길이 : 48m
5. 도로너비 : 5m
6. 도로면적 : 204㎡
7.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홍천군 홍천읍 와동리	550-3	전	713	204	박*자	

(2면 중 2면)

위치도 <축척: 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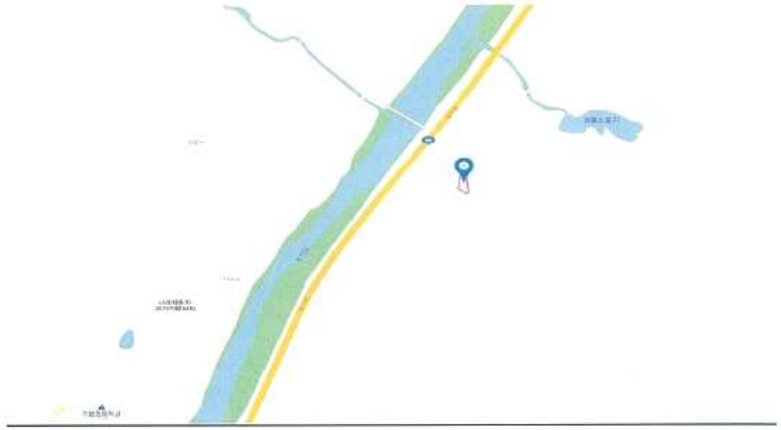

현황도 <축척 : 임의>

이해관계인의 관련 지번

30304 - 26821대 98.12.28 제정승인 210㎜×297㎜ [보존용지(2종) 70g/㎡]

홍천군 공고 제2021-1145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사업구역 출입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따라 **"내촌면 답풍리 가래올선(내촌203호선) 교량개축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측량 및 토지·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해 해당 토지에 출입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3.

홍 천 군 수

1. 사업시행자 : 홍천군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내촌면 답풍리 가래올선(내촌203호선) 교량개축공사**
3. 출입자 : 공익사업 업무 담당자 등
4. 출입기간 : 2021. 6. 3. ~ 사업 완료시까지
5. 출입목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및 측량 등
6. 출입할 토지의 구역 : 홍천군 내촌면 답풍리 일원
7. 출입대상토지 및 소유자 : "붙임" 편입 토지 조서와 같음
8. 문의처 : 홍천군 경제국 건설방재과 도로관리담당(보상담당자:033-430-2857)
9. 기타
   ○ 일출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사업시행자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한다.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적(㎡)	편입예상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면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36,760	944					
1	내촌면	답풍리	110		전	4,446	51	허*복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가래올길			
2	내촌면	답풍리	723		구거	29,152	530	국(농*축*식*부)				
3	내촌면	답풍리	95-2		전	582	3	이*철 외 1인				
								이*철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가래올길			1/2지분
								이*순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가래올길			1/2지분
4	내촌면	답풍리	95		전	244	12	안*영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가래올길	내*농*협*조*양*석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도관길 강원도홍천군내촌면가래올길	근저당권
5	내촌면	답풍리	95-4		전	95	6	안*영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가래올길	내*농*협*조*양*석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도관길	근저당권
6	내촌면	답풍리	95-5		전	242	233	홍*군				
7	내촌면	답풍리	95-6		전	137	51	홍*군				
8	내촌면	답풍리	100-1		도로	1,824	43	국(농*축*식*부)				
9	내촌면	답풍리	산175-1		임야	38	15	홍*군				

홍천군 공고 제2021-1147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내촌면 답풍리 가래올선(내촌203호선) 교량개축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내촌면 답풍리 가래올선(내촌203호선) 교량개축공사

나. 사업시행자 : 홍천군수

다. 위치(사업량) : 홍천군 내촌면 답풍리 일원
[교량설치 L=10m, B=7.5m, 도로확포장 L=50m, B=5.0m]

라. 공사기간 : ~ 2022. 6. 30.

※ 단,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는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및 보상금 청구서류 등 처리절차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나. 보상대상 :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일체

3.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 법 제68조에 따라 3인(같은 법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안내 :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4.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1년 6월 4일 ~ 2021년 6월 18일**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홍천군청 경제국 건설방재과 도로관리담당

5. 기타 보상관련 사항

가. 보상계획이 통지된 토지/물건에 대하여 착오, 누락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하고, 본 공사의 설계변경 등이 예상되거나 공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부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보상을 보류·제외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계획을 편입 토지 등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해 개별통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하고, 보상의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 이의신청 등 문의사항은 홍천군청 경제국 건설방재과 도로관리담당(033-430-2857)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4일

홍 천 군 수

내촌면 답풍리 가래올선(내촌203호선) 교량개축공사 편입토지조서

○ 내촌면 답풍리 가래올선(내촌203호선) 교량개축공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지번	지목	면적(㎡)	편입예상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면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36,760	944					
1	내촌면	답풍리	110		전	4,446	51	허*복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가래올길			
2	내촌면	답풍리	723		구거	29,152	530	국(농*축*식*부)				
3	내촌면	답풍리	95-2		전	582	3	이*철 외 1인				
								이*철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가래올길			1/2지분
								이*순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가래올길			1/2지분
4	내촌면	답풍리	95		전	244	12	안*영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가래올길	내*농*협*조*양*석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도관길 강원도홍천군내촌면가래올길	근저당권
5	내촌면	답풍리	95-4		전	95	6	안*영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가래올길	내*농*협*조*양*석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도관길	근저당권
6	내촌면	답풍리	95-5		전	242	233	홍*군				
7	내촌면	답풍리	95-6		전	137	51	홍*군				
8	내촌면	답풍리	100-1		도로	1,824	43	국(농*축*식*부)				
9	내촌면	답풍리	산175-1		임야	38	15	홍*군				

홍천군 공고 제2021-1148호

홍천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홍천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6. 9.
홍천군수

1. 목 적
○ 홍천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내실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함.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0. 06. 24.(목) 14:00 ~ 16:00
○ 장 소 : 홍천문화센터 2층(연봉중앙로 11-8)

3. 계획의 개요
○ 과업기간 : 2018. 02. 01 ~ 2021. 09. 16
○ 목표연도 : 2031년(2022년 ~ 2031년, 10년)
○ 과업대상 : 홍천군 전지역(A=1,820.18km²)
○ 주요내용 : 자연재해위험지구(8개 유형)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 수립(안)

4. 계획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장소 : 홍천군 건설방재과
○ 열람기간 : 공고일부터 2021. 06. 24.까지
○ 의견제출 : 공고일부터 2021. 06. 24.까지 서면제출
(제출처 : 홍천군 건설방재과(Fax 033-430-2912))

5. 코로나19 관련 준수사항
○ 코로나19 방역대책 이행 및 참석자 명단 작성을 위해 공청회 참석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불가)**
○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이 있을 경우 공청회장 입장이 불가하며, 최근 14일내 수도권 등 지역감염이 확산중인 지역을 여행하셨거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셨을 경우에도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홍천군 건설방재과(033-430-2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공청회 의견서

일 시	2021. . . ( )		
주 소		**연락처**	
성 명	(서명)	**E-mail**	

상기와 같이 홍천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홍천군수 귀하

홍천군 공고 제2021-1157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사업을 위한 측량 및 조사를 위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의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홍 천 군 수

가. 사업시행자 : 강원도(소방본부)
나. 사 업 명 :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사업(공공청사)
다. 출입기간 : 2021. 6. 15. ~ 건축허가 시 까지(일출 후 ~ 일몰 전)
라. 출입목적 : 토지 측량 및 지장물 조사 등을 위한 현지 조사
마. 출입토지의 구간 :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일원
바. 출입대상 토지 및 소유자 : 붙임 토지조서 참조
사. 문 의 처 : 강원도 소방본부(☎ 033-249-5150)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목	면 적(㎡)		소유자	비 고
			공부	편입		
계	**11필지**		**13,603**	**10,038**		
1	태학리 89-2	전	183	183	홍천군	
2	태학리 89-3	전	3,452	3,417	이**	
3	태학리 89-5	전	118	17	홍천군	
4	태학리 89-8	전	65	6	이**	
5	태학리 90	전	1,379	1,321	홍천군	
6	태학리 92-1	답	889	888		
7	태학리 92-3	대	2201	79		
8	태학리 92-17	답	61	15		
9	태학리 93	답	623	623		
10	태학리 94	전	2,928	2,928	이**	
11	태학리 281-2	구	1,704	561	국(국토교통부)	

위 치 도

현 황 도 S=1:1000

홍천군 공고 제2021-1165호

개발행위기허가 및 기준공지에 대한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기허가 및 기준공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홍 천 군 수

1. 사업명 : 개발행위기허가 및 기준공지의 도로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개야리 162-35
3. 도로길이 : 13.2m
4. 도로너비 : 4.0m
5. 도로면적 : 52㎡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서면 개야리	162-35	전	52	52	최*옥	

홍천군 공고 제2021-1166호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6월 4일

홍 천 군 수

1. 사업명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242-1
3. 도로길이 : 26.3m
4. 도로너비 : 1.0 ~ 5.3m
5. 도로면적 : 90㎡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서면 모곡리	1242-1	답	388	90	박*현	

(2면 중 제2면)

위 치 도	축척 : NONE

현 황 도	축척 : 1 /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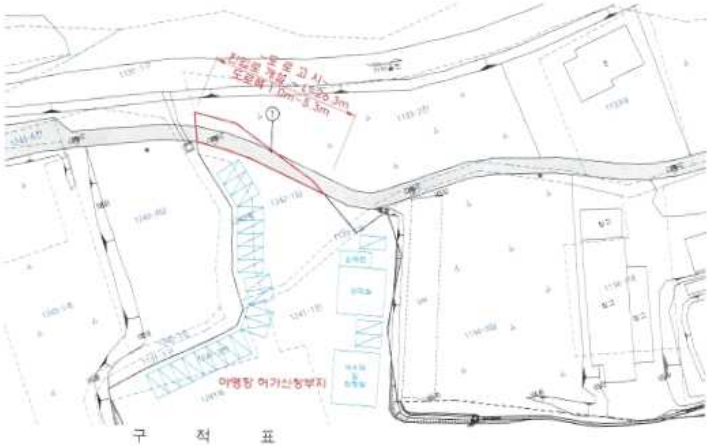

구 적 표

번호	동리명	지 번	지목	지 적(㎡)	신청면적(㎡)	비 고
①	조곡리	1242-1	답	388	90	
합 계				388	90	

* 면적산출은 CAD면적에 의함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1241-1 답

홍천군 공고 제 2021 - 1169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홍천군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및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동 조례 제9조(공고)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6. .

홍 천 군 수

1. 공인의 등록 및 폐기일 : 2021. 06. 01.

2. 등록 및 폐기 사유 : 면 명칭 변경

3.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공 인 명	규격및서체	최초사용연월일 (폐기연월일)	인 영
신 조	영귀미면장인	2.1cm 정방형 난초체	2021.06.01.	민원사무 영귀미 면장인 전용
폐 기	영귀미면장인	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2017.02.03. (2021.06.01.)	

홍천군 공고 제2021-1175호

개발행위기허가 및 기준공지에 대한 도로의 지정·공고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2조 및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기허가 및 기준공지의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홍 천 군 수

1. 사업명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로의 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518-58
3. 도로길이 : 47m
4. 도로너비 : 4.0m
5. 도로면적 : 188㎡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서면 모곡리	518-58	답	188	188	이*규	

위 치 도 축척 : 임의

현 황 도 축척 : ■ N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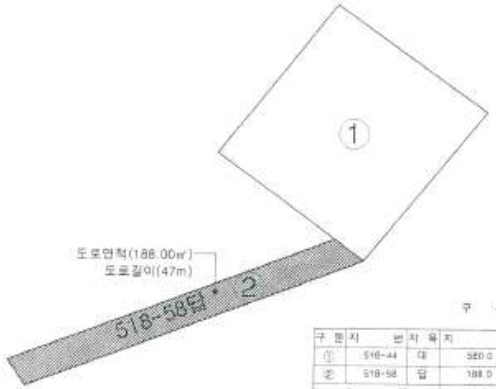

구 적 표 (단위 : ㎡)

구분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비고
①	518-44	대	580.0	580.0	단독주택 부지
②	518-58	답	188.0	188.0	진입도로
소계			768.0	768.0	

이해관계인의 관련지번 518-58

홍천군 공고 제2021-1177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변경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7일

홍 천 군 수

1. 공 고 명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887-3 외13필지, 이군자 외1인)
2. 건축위치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887-8번지 외1필지(산289-5)
3.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887-8번지 외13필지(산289-10, 산289-11, 885-4, 885-6, 886-4, 887-2, 887-5, 890-17, 890-24, 890-25, 890-26, 890-27, 890-28)
4. 도로길이 : 330m
5. 도로너비 : 4m~7m
6. 도로면적 : 2367㎡
7.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887-3	전	89	89	장*연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산289-10	임야	323	323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은*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산289-11	임야	10	10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885-4	도로	89	89	장*연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885-6	도로	174	174	장*연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886-4	도로	17	17	장*연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887-2	도로	8	8	장*연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887-5	도로	260	260	장*연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890-17	도로	479	479	장*연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890-24	도로	37	37	장*연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890-25	도로	85	85	장*연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890-26	도로	39	39	장*연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890-27	도로	22	22	장*연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리	890-28	도로	735	735	장*연	

위 치 도 축 척 : 임 의 (2면 중 제2면)

현 황 도 축 척 : 1/600, ■ 1/1200

동 리 명	지 번	면 적
삼마치	887-3	89.0
	산289-10	323.0
	산289-11	10.0

위 치 도 축 척 : 임 의 (2면 중 제2면)

현 황 도 축 척 : S=N.S

등 기 명	지 번	면 적
삶미지	885-4	89.0
	885-6	174.0
	886-4	17.0
	887-2	8.0
	887-5	260.0
	890-17	479.0
	890-24	37.0
	890-25	85.0
	890-26	39.0
	890-27	22.0
	890-28	735.0

홍천군 공고 제2021-1181호

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변경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1년 6월 7일

홍 천 군 수

1. 공 고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391-8, 길윤진)
2. 건축위치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391-1번지,391-8번지
3. 도로위치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391-8번지
4. 도로길이 : 11.6m
5. 도로너비 : 20m
6. 도로면적 : 5㎡
7.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391-8	전	685.00	5.00	길*진	

(2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임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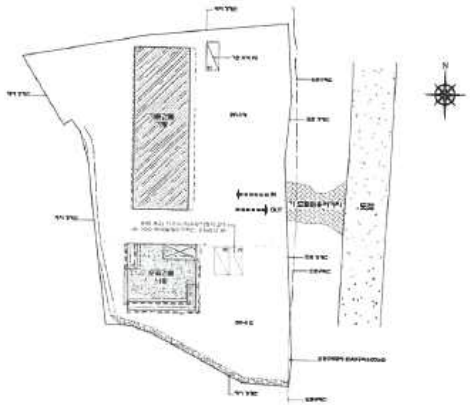

현황도	축 척 <임 의>

홍천군 공고 제2021-118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서면202호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사업인정과 관련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7.

홍 천 군 수

1. 사업개요
 가. 위 치
  - 홍천군 서면 동막리, 길곡리 일원
 나. 면 적
  - 지정 : 8,500㎡(1개 지구)
 다. 재해위험지구 지정 조서

지 구 명	위 치	지정내용				비 고
		유 형	등 급	면적(㎡)	지정사유	
서면202호선	홍천군 서면 동막리, 길곡리 일원	붕괴위험	다	8,500	집중호우 및 천둥,번개,낙뢰에 의한 도로 사면 붕괴위험지역	2010.06.08. (고시일)

2. 사 업 명 : 서면202호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 사 업 량 : 터널개설 L=138m, B=10m, 도로선형개량 L=757m, B=8.5m
4. 사업기간 : 2021. 6. ~ 2023. 6.
5.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장에 비치)
6. 열람 및 의견서 제출기간 : 2021. 6. 7 . ~ 2021. 6. 21.(14일간)
7. 열람장소 : 홍천군청 건설방재과 방재담당 (☎033-430-291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홍천군청 건설방재과 (☎033-430-29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호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의견서

사업명	**서면202호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장 위치	강원도 홍천군 서면 동막리,길곡리 일원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업인정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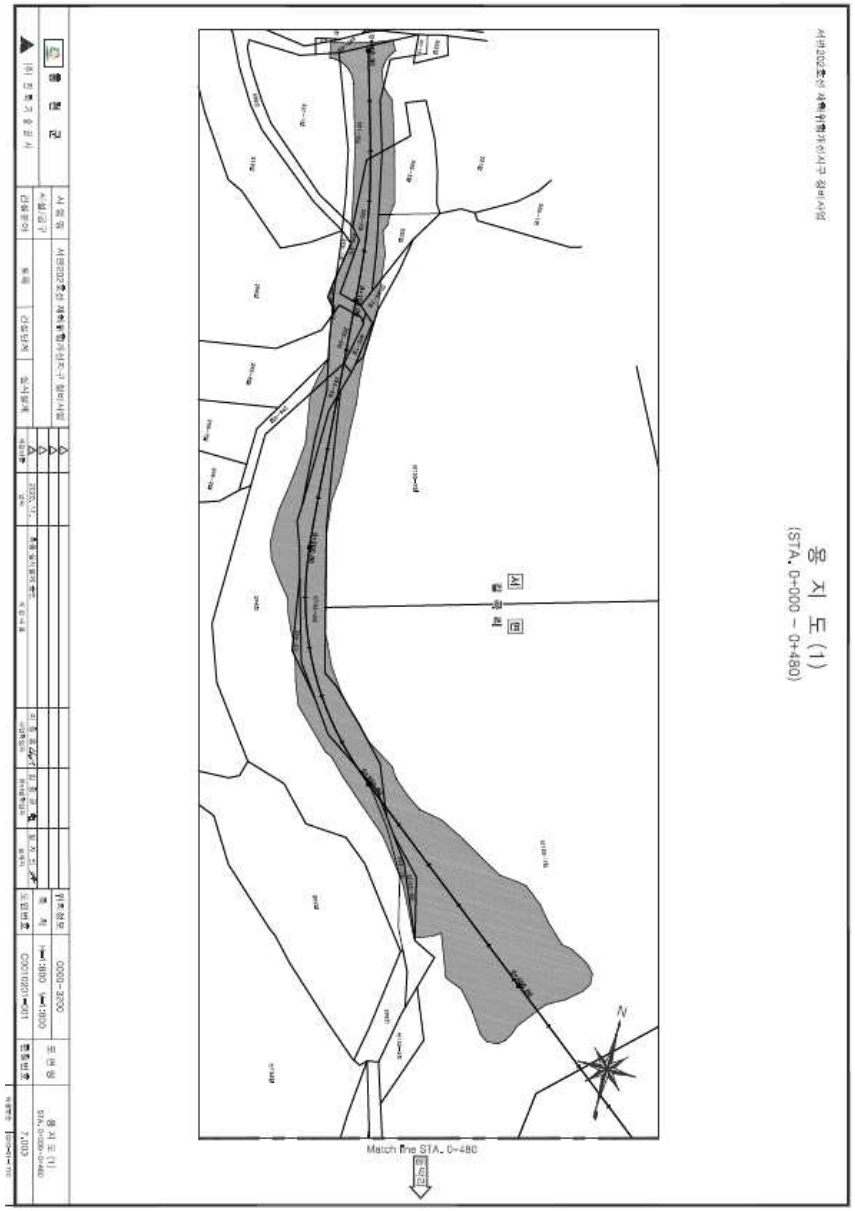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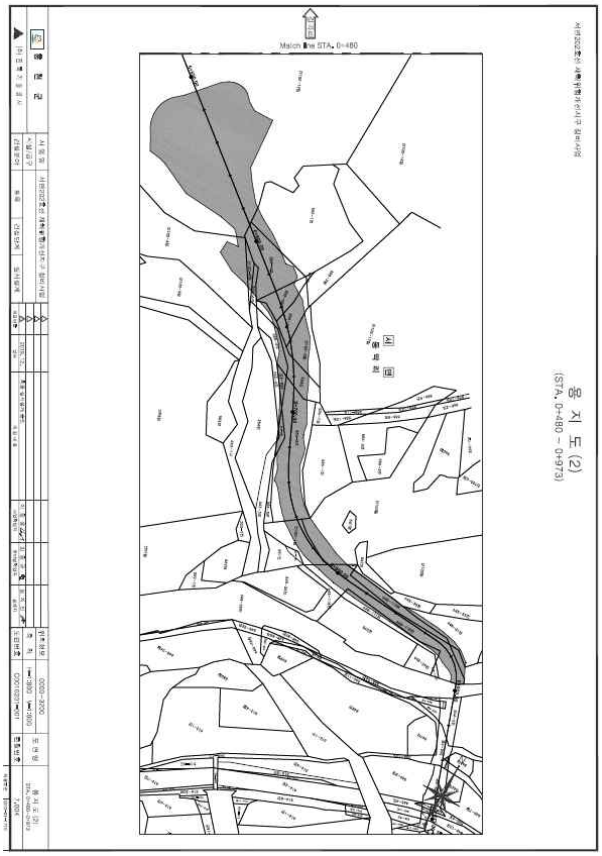

서면202호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편입토지조서

○ 서면202호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예상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계					120,174	17,671					
1	서면	길곡리	321	답	4,241	107	정*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낭암리길 30-19	홍천축협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5길 25	근저당권
2	서면	길곡리	321-2	도	922	628	홍천군				
3	서면	길곡리	320-3	답	777	145	정*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낭암리길 30-19	홍천축협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5길 25	근저당권
4	서면	길곡리	320	답	339	93	정*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낭암리길 74-8			
5	서면	길곡리	320-2	도	501	501	홍천군				
6	서면	길곡리	495-5	도	172	145	국(농수산부)				
7	서면	길곡리	산133-7	도	349	83	홍천군				
8	서면	길곡리	495-1	도	86	86	국(농수산부)				
9	서면	길곡리	295-3	도	230	230	홍천군				
10	서면	길곡리	294-3	도	154	154	홍천군				
11	서면	길곡리	산133-2	임	16,945	274	정*환 외 1인				
							정*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로 55, 103동 804호 (구월동,구월아시아드 선수촌센트럴자이)			1/2지분
							정*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84, 106동 2101호, (남가좌동,DMC에코자이)			1/2지분
12	서면	길곡리	294	전	5,400	1,072	오*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161, 503동 204호, (문촌마을5단지아파트)			
13	서면	길곡리	294-2	도	78	78	홍천군				

14	서면	길곡리	산133-5	도	1,553	1,483	홍천군				
15	서면	길곡리	293-1	도	377	106	홍천군				
16	서면	길곡리	산133-1	임	29,767	3,733	정*환	강원도 홍천군 서면 길곡길 402			
17	서면	길곡리	321-1	답	1,591	9	정*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낭암리길 30-19	홍천축협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5길 25	근저당권
18	서면	길곡리	495-4	도	178	53	국(농수산부)				
19	서면	길곡리	295-9	답	272	27	손*옥	강원도 홍천군 서면 낭암리길 46-12			
20	서면	길곡리	산133-4	도	80	80	홍천군				
21	서면	길곡리	296-2	도	1	1	홍천군				
22	서면	길곡리	495-3	도	16	16	국(농수산부)				
23	서면	동막리	산100-19	임	33,058	3,695	김*하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932, 202동 3103호 (묵동,묵동자이2단지)			
24	서면	동막리	555-1	전	2,368	106	이*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99-34	양주축협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5(의양지점)	근저당 지상권
25	서면	동막리	555-5	답	653	629	홍천군				
26	서면	동막리	산100-4	임	3,959	239	홍천군				
27	서면	동막리	산100-5	임	22	22	홍천군				
28	서면	동막리	555-6	답	264	229	김*연	경기도 양평군 설악면 송산리			
29	서면	동막리	555-7	답	266	223	홍천군				
30	서면	동막리	563-4	구	57	40	국(농림수산부)				
31	서면	동막리	산100-2	임	370	248	홍천군				
32	서면	동막리	555	도	343	239	홍천군				
33	서면	동막리	555-4	도	222	78	홍천군				
34	서면	동막리	556-4	전	60	60	이*호 외 4인				
							이*명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자잠로 86, 103동 1501호 (북한강코아루아파트)			1/2지분
							이*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13, 102동 805호			1/22지분

								(쌍문동,청구아파트)			
							이*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68, 607동1204호(풍동,숲속마을)			1/22지분
							이*화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7, 12동 1002호 (광장동,워커힐아파트)			1/22지분
							홍천군				8/22지분
35	서면	동막리	556-3	도	1,284	992	홍천군				
36	서면	동막리	563-5	도	52	52	국(농수산부)				
37	서면	동막리	산100	임	9,412	227	(주)에스큐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시 송파구 중대로 212, 4층(가락동)			
38	서면	동막리	산100-1	임	738	233	홍천군				
39	서면	동막리	648-113	도	273	273	홍천군				
40	서면	동막리	648-115	천	895	757	국(건설부)				
41	서면	동막리	648-111	도	227	74	홍천군				
42	서면	동막리	648-31	전	636	82	김*범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서로 236-10			
43	서면	동막리	648-43	천	482	51	국(건설부)				
44	서면	동막리	554-1	도	347	3	홍천군				
45	서면	동막리	563-6	도	157	14	국(농수산부)				

홍천군보건소 공고 제2021-13호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공고

질병관리청과 홍천군보건소에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조사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1. 5. 25.
홍천군보건소장

1. 모집인원 및 업무내용

모집분야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모집인원	4~6명
근무지역	홍천군 관내
주요 업무내용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수행 *조사수행 전 표본지점 확인조사 실시, 조사대상가구로 선정된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만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태블릿PC를 이용해 1:1 면접조사 수행
조사기간	2021. 08. 16. ~ 2021. 10. 31.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종료일은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조사시작 전 조사원 교육을 이수해야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조사원 교육 일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교육(7월 초 예정)
· 안전한 조사 수행을 위해 감염병 예방.대응 교육 실시 예정

2. 모집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자격요건**
○ 20세 이상 성인
○ 컴퓨터 및 인터넷, 개인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자
*질병관리청 조사시스템 접속 시 개인식별이 필요하므로 인증서 보유 필수
○ 심신이 건강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자
○ 근무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업무가 가능한 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이중취업자가 아닌 자

□ **우대요건**
○ 업무 경력자 우대
*기 참여 조사원 중 자체 사후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
○ 조사지역 거주자이며, 지역실정에 밝은 자

3.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 **2차 면접전형(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컴퓨터 활용능력, 책임감 및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

4. 제출서류

필수	·응시원서 1부(붙임1) *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 이메일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필수 *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2) * 반드시 서명 후 제출 * 채용을 위한 본인식별, 조사원 상해보험가입 및 조사수행 지원활동 목적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이중취업 확인용
선택	·전산관련 자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지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자격증사본, 건강보험증사본 등) 반드시 제출
* 서류 미비자는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 전산자격증은 자격증명서 및 사본을 제출해야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지원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가능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채용을 취 소할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1. 5. 25(화) ~ 6. 15(화)
□ **접수방법**: 본인 직접 방문접수
□ **접수 및 문의**

문의처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홍천군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 담당자	박지혜	(우25135) 홍천군 신장대로5 홍천군보건소 3층 방문보건	430-4061

6. 심사일정
- □ **서류합격자 발표**: 2021. 6. 21(월)
- □ **면접일시**: 2021. 6. 25(금) 10:00~
- □ **면접장소**: 홍천군보건소
- □ **최종합격자 발표**: 2021. 6. 29(화)
  - 개별 유선 통보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
- □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채용을 해지하며 보수 감액 및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
- □ **부정행위(조사지침 미준수)로 폐기된 조사자료에 대한 조사수당 미지급**
- □ 조사수당 총 지급액이 **125,000원 초과 시 소득세 원천징수액(8.8%)이 포함**되어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조사수당 지급

【붙임 1. 지원신청서】

사 진 (최근 6개월 이내) (3 * 4cm)

접 수 번 호 (※응시자 미기록)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지원 신청서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만 세)
주소 및 연락처	자택 주소			
	자택 번호☏	( ) -	휴대전화☏	- -
	E-mail	@		
현재직업	□ 무직 □ 가정주부 □ 퇴직공무원 □ 기타( )			
지역사회 건강조사 참여년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통계조사 참여경력 (최신 순)	기 간	소속기관	근무처	담당업무 내용

전산관련 자 격 증	자격증명	취득일자	발행기관	컴퓨터 활용능력	□ 상	□ 중	□ 하
				개인 공인인증서	□유	□무	

지원동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1. . .

신 청 자 : 서명(인)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활동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가. 수집·이용 목적 :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채용을 위한 본인식별, 조사원 상해 보험 가입 및 조사수행 지원 활동 나. 수집개인정보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 등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상해보험 가입 시 필요)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가.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조사원 선정 시 및 조사수행 기간 동안 사용되며, 신청서 제출일부터 1년 보관함 나. 신청서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일 부터 1년 보관함
3.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가. 조사원 지원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나. 다만,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조사원으로 채용이 불가함
4. 개인정보의 위탁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수행 및 지원기관인 질병관리청, 총괄대학(인제대학교보건대학원), ○○대학교, 통신사, 전화점검 수행기관에서 사용함

2021. 6 . .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 지원자 : (인)